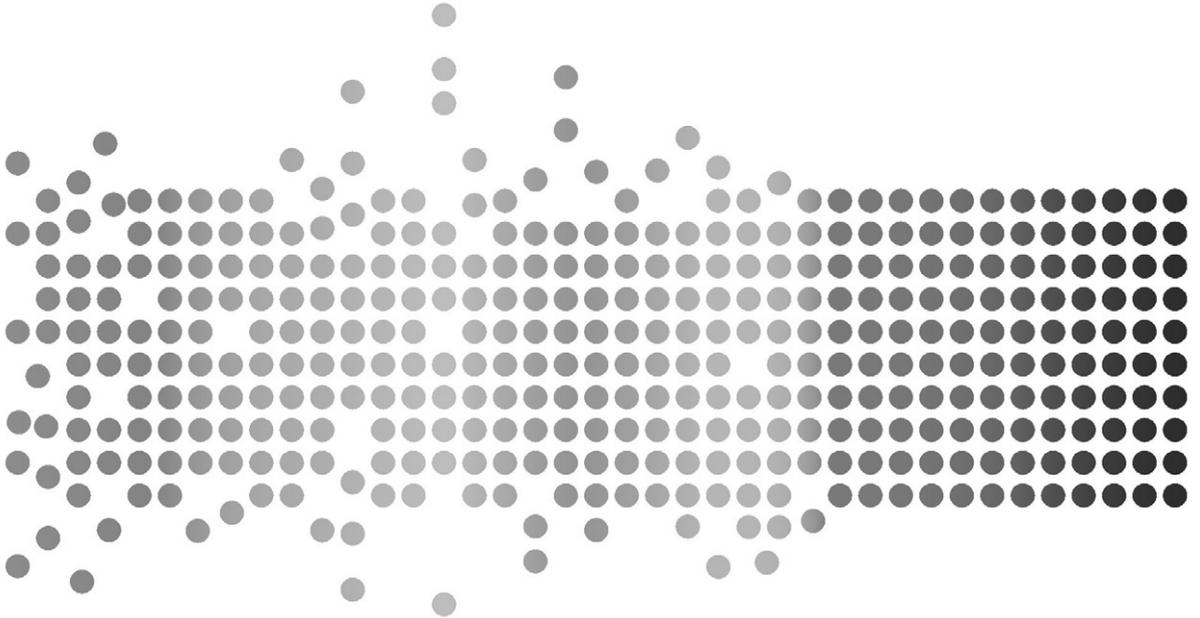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care Policies

최성은 · 우석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평가센터

연구보고서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발행일 2009년 12월
저자 최 성 은 외
발행인 김 용 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8,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14-2 93330



머리말

출산의 감소와 연기,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가하는 등 인구학적인 변화는 전통적인 남성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한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속적인 경기 침체와 평균 이상의 실업률 수준,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경제적 취약집단인 가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빈곤의 위험에 처한 가족들을 보호할 다양한 정책의 입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참여 때문에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는 부모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미혼남녀의 의식 역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강화라는 측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선진국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유자녀 가족의 다층적인 복지욕구를 해결하고자 현금 급여와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와 국가가 분담하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그러한 경제적 부담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한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로 지원대상과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어져 오고 있는 보육정책은, 지원예산의 급격한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영유아 가구의 보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시설의 지역간 격차와 민간과 국공립 기관의 양적 불균형,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및 시장기능 강화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육정책의 기혼여성 노동참여에 미치는 효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및 출산율 효과분석을 통하여 보육정책의 목표를 재검토하고 보육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최성은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준 조정현 연구원, 송해련 연구원, 강지원연구원, 윤지혜 연구보조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본 연구의 수행과 결과 등에 유익한 조언을 주신 본원의 김미숙 연구위원과 박세경 부연구위원, 여성정책연구원의 홍승아 연구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사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보육정책의 주요내용	15
제1절 보육정책의 정책목표	15
제2절 보육정책 현황	17
제3절 보육재정 현황 및 전달체계	42
제3장 보육시설 이용현황 및 보육비 분석	61
제1절 보육시설 이용 현황	61
제2절 가계보육비 분석	73
제4장 보육료 지원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85
제1절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 모형	88
제2절 자료의 분석과 설명	89
제3절 보육료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에 미치는 효과	91
제4절 보육료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94
제5절 소결과 정책적 시사점	96

제5장 보육정책의 출산율제고 효과분석	101
제1절 모형	105
제2절 자료 및 추정결과	110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32
제6장 결론 및 보육지원정책의 과제	137
참고문헌	141
부 록	149

표 목차

〈표 2- 1〉 보육지원의 정책목표17

〈표 2- 2〉 보육료 지원 연혁18

〈표 2- 3〉 차등보육료 소득인정액 기준28

〈표 2- 4〉 차등보육료 정부지원단가29

〈표 2- 5〉 두자녀이상 보육료 소득인정액 기준30

〈표 2- 6〉 정부지원단가31

〈표 2- 7〉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인정액 기준32

〈표 2- 8〉 방과후 보육료 소득인정액 기준34

〈표 2- 9〉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단가34

〈표 2-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시설의 인건비 지원38

〈표 2-11〉 양육수당 소득인정액 기준42

〈표 2-12〉 보육정책 예산추이46

〈표 2-13〉 GDP 대비 보육예산의 증가 추이(1991-2009)47

〈표 2-14〉 지방보육정보센터 현황51

〈표 2-15〉 보육정보센터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52

〈표 2-16〉 주체별 보육시설 설치 현황53

〈표 2-17〉 특수보육시설 설치 현황55

〈표 3- 1〉 연도별 보육시설 설치·운영 현황63

〈표 3- 2〉 연도별 보육시설 보육아동 현황66

〈표 3- 3〉 시설 대비 아동 수 현황68

〈표 3- 4〉 보육시설 현황70

〈표 3- 5〉 특수보육시설 이용현황72

〈표 3- 6〉 표준보육비 산출모형74

〈표 3- 7〉 아동 1인당 표준 보육비의 구성	75
〈표 3- 8〉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	75
〈표 3- 9〉 연령별 보육비 추이(2004년-2007년)	77
〈표 3-10〉 소득계층별 보육비분석	79
〈표 3-11〉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별 보육비 1	81
〈표 3-12〉 이용형태별 보육비 2	81
〈표 4- 1〉 기초 통계	91
〈표 4- 2〉 노동참여결정식	93
〈표 4- 3〉 임금 추정식	94
〈표 4- 4〉 노동공급시간 추정식	96
〈표 5- 1〉 웨이브 10 자녀수 분포(가구자료)	111
〈표 5- 2〉 기혼여성 연령의 분포	113
〈표 5- 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13
〈표 5- 4〉 기혼여성의 취업형태와 자녀수	114
〈표 5- 5〉 산업대분류(2002년, 통계청)	115
〈표 5- 6〉 20대 혹은 30대 시작한 일자리의 지속기간	119
〈표 5- 7〉 20대 혹은 30대에 시작한 일자리수	120
〈표 5- 8〉 요약통계량 1	125
〈표 5- 9〉 요약통계량 2	125
〈표 5-10〉 추정결과 1(현재 공공부문 근무여부)	126
〈표 5-11〉 추정결과 2(20대 공공부문)	127
〈표 5-12〉 추정결과 3(30대 공공부문)	128
〈표 5-13〉 추정결과 4(20대, 30대 공공부문 통제)	129
〈표 5-14〉 추정결과 4(직종 통제)	130

그림 목차

[그림 2-1]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 과정	41
[그림 2-2] 보육예산의 증가 추이(1991-2009)	43
[그림 2-3] 보육예산의 증감액 추이(1991-2009)	44
[그림 2-4] 보육예산의 증가율 추이(1991-2009)	44
[그림 2-5] GDP 대비 보육예산의 증가 추이(2000-2009)	47
[그림 3-1] 연도별 보육시설 설치·운영현황	64
[그림 3-2] 전년 대비 아동 및 시설 수 증가율	67
[그림 3-3] 연령별 보육비 변화추이	77
[그림 3-4] 소득계층별 보육비 변화 추이	79
[그림 3-5] 이용 형태별 보육비 변화추이	82
[그림 4-1] 여성 고용율의 국제비교	86
[그림 4-2] 우리나라의 연령별 여성 고용율(2000-2009)	87
[그림 4-3] 연령별 여성 고용율의 국제비교	87
[그림 5-1] 최적출산결정	108
[그림 5-2] 웨이브 10 자녀수 분포(가구자료)	111
[그림 5-3] 자녀의 연령분포	112
[그림 5-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자녀수 분포	117
[그림 5-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자녀수 분포(임금노동자)	118
[그림 5-6] 20대에 근무한 산업과 자녀수	121
[그림 5-7] 30대에 근무한 산업과 자녀수	122
[그림 5-8] 30대에 새로 시작한 직업의 산업과 자녀수	123

부표 목차

〈부표 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자녀수와 연령분포(전체)149

〈부표 2〉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자녀수와 연령분포(임금노동자) ..151

〈부표 3〉 직종분류(통계청, 2002년)152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central grey circle with several smaller, lighter grey circles of varying sizes scattered around it, resembling a splash or a cluster of bubbles.

Abstract

Childcare policies in Korea has expanded rapidly in both the number of beneficiaries and th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Childcare budget has increased from 300 million won in 2003 to 1,700 million won in 2009. The beneficiaires of childcare cost subsidy has expanded from the low income household to the middle income household. However, the childcare policy in Korea failed to provide with clear policy objectives and directions. The increases in the public expenditure do not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childcare policy.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childcare policy in terms of female labor supply and the fertility rate.

The analysis shows that childcare policy has negative impact on the labor supply of the married women, in terms of both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labor hours. This implies that the current childcare subsidy system has disincentive for labor supply. The benefit level is not continuous by means-tested income level, resulting income bracket creep. Labor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raises household income and this may lead to loose the childcare benefit.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break in career path from

childbirth affects fertility rate in negative way. Comparing the public sector employees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married women in public sector that face less risks in losing jobs show higher fertility rate than those in private sector. This implies that childcare policy should ease the risk of the break in career path that married women face. Childcare policy that alleviate the burden of childcare of working women may achieve two different goals of childcare policy, which is increasing female labor supply and fertility rate. This may require restructuring of current childcare policy in Korea toward the third childcare policy model. It may include the reinforcement of incentive system for working women, and more active utilization of private sector b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childcare services market and less regulation on the market. In addition, the regional inequalities in childcare facilities need to be solved.

요약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크게 보육비지원정책,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기능보강사업, 보육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공보육 기반조성,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참여정부 이후 규모가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다. 2003년에는 보육부문 사업이 약 3,000억원 규모였던 것이 2009년에는 약 1조 7천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면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보육정책의 확대는 주로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까지 보육료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맞벌이 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등, 향후에도 보육정책은 규모면에서 지속적인 확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정책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이 사업이 확장되어 온 측면이 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수당지급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책방향이 명확하지 않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대상자의 확대와 예산의 추가적 투입에 대한 반성과 명확한 정책방향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육정책이 여성의 사회활동 욕구를 저해하는 보육환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하여 여성의 노동참여율과 노동공급을 제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보육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육료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분석 결과 보육료 지원은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와 노동공급시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까지의 보육료 지원이 비연속적인 소득구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의 취업으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는 보육료지원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는 보육료 지원체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육료 지원이 소득 구간별로 비연속적으로 결정되므로,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2007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만5세아 보육료 전액 무료 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까지였던 것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까지로 확대되고, 차등 보육료 부분적 지원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인 가구까지 확대되는 등 보육료 지원대상이 증가하였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인 3층에는 50%의 보육료가 지원되던 것이 80%로 증가하였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인 4층에는 40%의 보육료가 지원되던 것이 50%지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보육료 지원구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

조가 취업에 대한 유인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기혼여성의 경우 출산 및 육아와 노동참여 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있다. 여성에게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주거나 경력에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공공 부문에 근무한 여성과 민간부문의 여성의 출산 자녀수를 비교함으로써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30대에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보다 0.6명 정도 추가적으로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시기에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 부문에 근무하는 여성이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이는 보육정책이 육아부담의 완화를 통하여 여성이 직면하는 경력단절이라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보육정책 외에도 기타 노동시장정책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문화의 정착 등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육정책이 보육료지원과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가정내보육의 선호가 줄어들고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인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가와 출산율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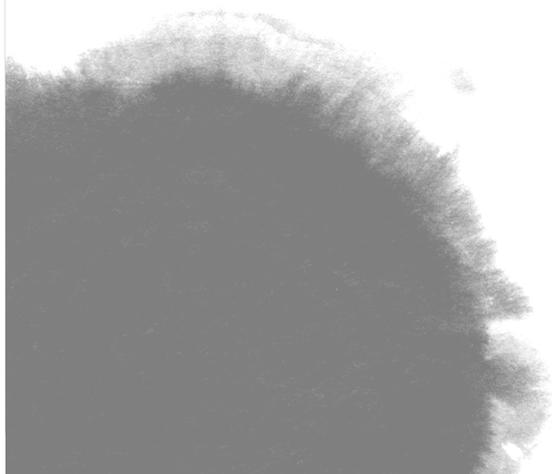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공급은 기혼여성 취업자의 경우 저숙련, 저학력, 저임금 직종의 노동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별 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 낮은 저소득층 기혼여성이 생계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취업하는 경우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보육료지원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은 다분히 존재한다. 현실적으로도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되

었다가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여 오고 있다. 보육료 지원은 최근에 들어 해마다 1~2조원씩 예산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 대상과 지원액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어서, 어느 수준까지 보육지원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육지원의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보육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있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가 자녀의 양육책임을 나누어지는데 있어서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이미 높은 복구형 모형의 맥락에서 추구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것보다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보육부담으로 인한 여성 노동참여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제고하는 모형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모델, 보육시설의 양질화를 통한 보육시설 이용률 제고, 여성노동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육지원 모형 등 보다 한국적인 제삼의 보육정책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육지원을 통한 자녀 양육의 부담완화와 여성노동공급의 활성화는 보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정책은 맞벌이 부부에게 노동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육료지원 대상의 소득구간별 비연속성으로 인해 노동유인이 감소되는 지원형태의 재설계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출산과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질의 보육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공립시설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육료 자율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간 보육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공보육 기반조성,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이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참여정부 이후 규모가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다. 2003년에는 보육부문 사업이 약 3,000억 원 규모였던 것이 2009년에는 약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등 규모면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보육정책의 확대는 주로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까지 보육료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맞벌이 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등, 향후에도 보육정책은 규모면에서 지속적인 확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정책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이 사업이 확장되어 온 측면이 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수당지급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책방향이 명확하지 않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대상자의 확대와 예산의 추가적 투입에 대한 반성과 명확한 정책방향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육정책이 여성의 사회활동 욕구를 저해하는 보육환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하여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제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보육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효과성을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과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효과와 여성의 경력단절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보육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과 보육정책의 정책목표 수립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보육정책의 현황과 제도 변천과정 및 정책목표를 되짚어 보고, 보육재정의 현황과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보육시설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가계보육비를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아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계보육비 분석에는 노동패널의 각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보육실태조사의 가계보육비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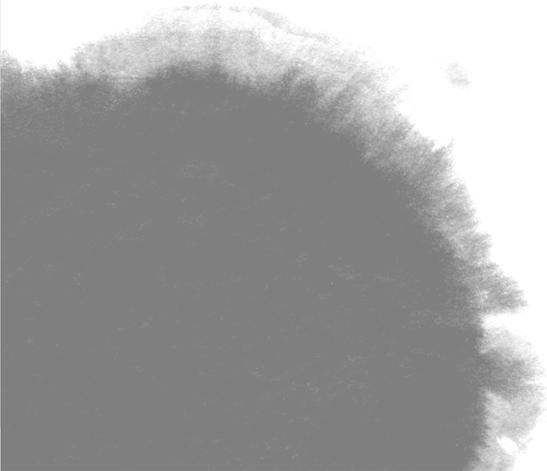
보육정책의 효과분석은 보육료 지원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와 여성의 경력단절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노동패널 10차년도 자료와 노동패널 1-10차년도의 직업

력 자료이다. 노동공급효과는 65세 이하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노동참여와 노동공급시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노동참여식은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였고, 노동공급시간에 대한 효과는 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를 고려하여 세 단계 (three stage) Heckit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경력단절 위험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경력단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공부문 종사자와 상대적으로 큰 민간 부분 종사자의 출산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보육정책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보육료 지원정책과 시설에 대한 지원정책 등으로 이루어진 보육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보육지원 제도의 주요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보육재정 현황과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보육통계상에 나타난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보육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계보육비를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보육료 지원의 기혼여성에 대한 노동공급효과를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과 노동공급시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보육정책의 출산율제고 효과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위험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제6장은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02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제2장 보육정책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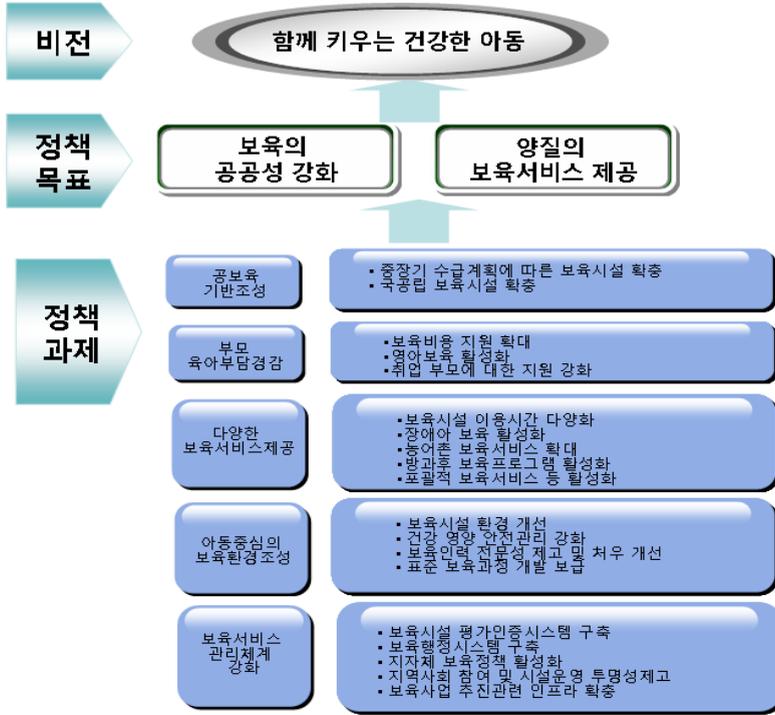
제1절 보육정책의 정책목표

보육정책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이라는 비전아래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크게 다섯 가지 측면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보육의 발전 방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첫째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공보육 기반의 조성을 꾀하며, 둘째로 보육비용 지원 확대 및 영아보육 활성화,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부모 육아 부담을 낮추는 것을 지향한다. 셋째로 보육료 지원 확대의 기본적인 목적 외적으로 표준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보육지원에 대한 수급에 있어 기존에 소외되었던 대상이나 그 지원이 미비했던 부분들을 더욱 확충, 강화함으로써 보육지원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다문화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 관련 교육 강화가 그 실례가 될 수 있겠다.

넷째로,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건강·영양, 가족지원, 인지능력 향상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의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보육시설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칭) 「보육시설안전 공제회」 설립하여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안전사고 보상 등 사후관리 실시하여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 및 16개의 시도에서는 유치원·학교 안전사고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종플루 등과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적절한 시기의 예방접종 등을 위하여 기초적인 예방접종 등 내역 확인의무를 강화하고 보건소를 활용하여 건강교육·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한 영유아 건강·영양관리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의 경우,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장비구비 지원 등이 그 실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장애아 보육시설의 특수교사자격을 특수학교 교사수준으로 강화 등의 경우해당). 다섯째,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의 목표아래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준 높은 보육시설의 확충의 차원에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의 측면에서 인증 참여율 확대할 수 있도록 인증제 개선 방안을 들 수 있겠다. 한편, 보육행정시스템 구축(e-보육,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해 보육시설운영을 돕도록 한다.

〈표 2-1〉 보육지원의 정책목표



자료: 보육사업안내이용, 2007 여성부

제2절 보육정책 현황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주관부서가 복지부에서 2004년 여성부로 이관되었다가, 2008년 다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등 변동이 잦은 탓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보육지원은 1990년부터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시두로 하였다. 이후 1992년 수요자를 대상으로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나, 지원 규모면에

있어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월등하였다. 최근에 들어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이라는 방향 하에 차등보육료 지원의 대상도 확대되고, 2005년에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시행하는 등 보육료 지원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2009년에는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이 도입되었다. 여기서는 보육료 지원 사업과 시설지원 사업, 보육정책 관리감독 지원, 양육수당 등의 보육정책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 2-2〉 보육료 지원 연혁

구분		지원단가	지원대상	비고
1999	저소득층 보육료	법정저소득층 2세 미만 213,000원 2세 176,000원 3세이상 109,000원	영유아보육법 제 6조에 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포함.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보호중인 아동 2년간 지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아동)	
	기타저소득층	2세 미만 85,000원 2세 70,000원 3세이상 44,000원	기타 저소득층 아동: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수준 이하가정 -가구당재산 32,000만원 이내 (4,800만원 이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3인 920천원까지 4인 1,020천원까지 5인 1,120천원까지	
2000	저소득층 보육료	법정저소득층 2세 미만 219,000원 2세 181,000원 3세이상 112,000원	·법정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부자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 취학전 2년전 아동 3인이하: 950천원 4인1,050천원 5인이상:1,150천원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전년대비 약 3% 상향
	기타저소득층	2세 미만 87,600원 2세 72,400원	기타 저소득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	

구분		지원단가	지원대상	비고
		3세이상 44,800원	<p>특의 46.7%수준 (4인가족 기준 105만원) 이하 및 가구당 재산이 3,200만원(48,000만원) 이하 가정의 아동</p> <p>-가구원별 소득기준: 3인 950천원까지 4인 1,050천원까지 5인 1,150천원까지</p>	
	만5세아 무상보육	112,000원	<p>-법정저소득층 아동: 저소득층 보육료 기준과 동일</p> <p>-기타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에 의거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p> <p>-농어촌(읍·면)지역 저소득층 만 5세아)기타 저소득층 취학 직전 1년 유아에게도 적용)무상 보육 실시</p>	신설
	장애아보육료	<p>중증장애아(장애등급 1~3급): 2세미만 보육 단가 적용</p> <p>경증장애아(장애등급 4~6급): 2세아 보육 단가 적용</p>	<p>장애인 수첩 소지자 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준하는 자(의사의 진단서)</p> <p>-중증장애아(장애등급 1~3급) 경증장애아(장애등급 4~6급)</p>	
2001	저소득층 보육료	<p>법정저소득층</p> <p>2세미만 225,000원 2세 186,000원 3세이상 115,000원</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p> <p>-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부자가정 아동</p> <p>-아동복지시설 취학 전 2년까지의 아동</p>	
		<p>기타저소득층</p> <p>2세미만 90,000원 2세 74,400원 3세이상 46,000원</p>	<p>-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에 의거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책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p> <p>-아동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가구당 재산: 3인까지: 95만원(3500만원 /5,250) 4인: 105만원(3,700만원 /5,550) 5인이상: 115만원(4,000만원 /6,000)</p>	
	무상보육료	115,000원	<p>-법정저소득층 아동: 저소득층 보육료 기준과 동일</p> <p>-기타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에 의거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p>	

구분		지원단가	지원대상	비고
			당하는 자 -농어촌(읍·면)지역 저소득층 만 5세아)기타 저소득층 취학 직전 1년 유아에게도 적용)무상 보육 실시	
	특수보육료 등	취학이동 방과후 보육, 장애아보육, 야간보육,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 보육은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저소득층의 지원 단가 를 기준으로 지원		
2022	저소득층 보육료	법정저 소득층	2세미만 232,000원 2세 192,000원 3~4세 119,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 급권자의 아동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로 선정된 모자·부자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 취학전 2년까지 의
		기타저 소득층	2세미만 92,800원 2세 76,800원 3~4세 47,600원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에 의거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책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아동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가구당 재산: 3인까지: 100만원(3600만원 /5,400) 4인: 110만원(3,800만원 /5,700) 5인이상: 120만원(4,100만원 /6,150)
	만 5세아 무상보육	·법정저소득층 119,000원 ·기타저소득층: -농어촌 119,000원 -국고보조시설 86,000원 -민간보육시설: 100,000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기준과 같음(단, 아동복지시설은 취학전 1년 까 지의 아동) ·기타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에 의거 만 5세아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책 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재산기 준 3인까지: 140만원(4,600만원 /6,900) 4인: 160만원(5,000만원 /7,500) 5인이상: 180만원 (5,400만원 /8,100)	
	특수이동	취학이동 방과후 보육, 장애아보육, 야간보육,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 보육은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저소득층의 지원단가 를 기준으로 지원		

구분		지원단가	지원대상	비고
2003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법정저소득층 2세미만 243,000원 2세 201,000원 3세이상 125,000원	·법정저소득층 중 기초생활 수급자녀, 모·부자 가정 아동	
		기타저소득층	-소득인정액 기준 3인 105만원이하 4인 125만원 이하 5인 140만원 이하 6인이상: 158만원 7인이상: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의 120% 적용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방식인 “소득인정액” 제도 적용(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만5세아 무상보육료	·법정저소득층 125,000원 ·기타저소득층: -농어촌 125,000원 -국고보조시설 90,000원 -민간보육시설: 105,000원	-소득인정액 기준 3인까지: 200만원 이하 4인 : 215만원 이하 5인 : 230만원 이하 6인 : 245만원 이하 7인이상 : 1인 증가시마다 15만원 씩 증가 (260만원) 취학유예 만 6세 아동에 대한 지원	장애 인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영아는 경증 장애 아동 지원으로 적용
장애아 무상보육	중증장애아: 243,000원 경증장애아: 201,000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영아는 장애진단서 제출로 같음		
2004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1층 2세미만:257,000원 2세 212,000원 3세~4세131,000원 2층 2세미만:154,000원 2세 127,200원 3세~4세 78,600원 3층 2세미만:102,800원 2세 84,800원 3세이상 52,4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1층 100% 지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부자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 3~4세 아동 -소득인정액 기준 2층:(60% 지원) 3인:101만원이하 4인:127만원이하 5인:144만원이하 6인:163만원이하 3층:(40% 지원) 3인:126만원이하 4인:159만원이하 5인:180만원이하 6인:203만원이하	3세아 까지 대상확대 -2층 최저 생 계 비 120% -3층 최저 생 계 비 150%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법정저소득층 131,000원 ·기타저소득층: -농어촌 131,000원	-소득인정액 기준: 3인:208만원이하 4인:223만원이하

구분	지원단가	지원대상	비고
	-국고보조시설 94,000원 -민간보육시설: 110,000원	5인:238만원이하 6인:253만원이하	
장애아 무상보육료	중증장애아: 257,000원 경증장애아: 212,000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영아는 장애진단서 제출로 같 음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영 아 (0~2세):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를 적용	
시간제 및 기준 시간 초과 보육료 등 지원	· 시간제 (기준시가 초과) 보육료 -2,500원/시간당 · 방과후 보육료: 소득인정액에 해당되는 대상에게 3세이상 보육료의 50%(65,500원), 장애아 보육료 의 50%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1층 100%, 2층 60%, 3층 40%를 지원.		
2005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지원 2세 미만 299,000원 2세 247,000원 3~4세 153,000원	· 저소득층 0~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272천명) · 도시근로자 구 평균소득 60% 이하, 소득 수준에 따라 4계층 까지 차등 지원 1층: 기초생활 수급자 등 2층: -3인 109만원 이하 -4인 136만원 이하 -5인 156만원 이하 -6인 177만원 이하 3층: -3인 150만원 이하 -4인 170만원 이하 -5인 190만원 이하 4층: -3인 184만원 이하 -4인 204만원 이하 -5인 224만원 이하 -6인 244만원 이하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53,000원	3인까지: 252만원 이하 4인: 272만원 이하 5인: 292만원 이하 6인: 312만원 이하	도시근로 자가구 평 균 소 득 80%이하
장애아 무상보육료	보육료 전액지원 299,000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9천명)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구분	지원단가	지원대상	비고	
		등록증, 만5세이하의 경우 장애 진단서 필요)		
두자녀 보육료	만 2세미만: 6만원 만 2세 : 5만원 만 3~5세 : 3만원	둘 이상의 자녀가 시설 이용시 둘째아 보육료 지원 (신규 3만명) 3인까지: 320만원이하 4인: 340만원 이하 5인: 360만원 이하 6인: 380만원 이하		
시간제 및 기준 시간 초과 보육료 등 지원	시간연장제 보육 -1,500원/시간당			
2006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지원	<p>만0세 350,000원 만1세 308,000원 만2세 254,000원 3~4세 158,000원</p> <p>*기본보조금 지원 (민간시설) 만0세 249,000원 만1세 104,000원 만2세 69,000원</p>	<p>1층(100%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및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p> <p>2층(100%지원) -3인: 113만원 이하 -4인: 140만원 이하 -5인: 162만원 이하 -6인: 185만원 이하</p> <p>3층(70%지원) -3인: 156만원 이하 -4인: 176만원 이하 -5인: 196만원 이하 -6인: 216만원 이하</p> <p>4층(40%지원) -3인: 227만원 이하 -4인: 247만원 이하 -5인: 267만원 이하 -6인: 287만원 이하</p>	<p>1층 법정 저소득층 2층 최저생계비 120% 3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4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p> <p>※ 민간시설 질 개고를 위해 기본보조금 도입</p>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58,000원	<p><도시지역> 3인까지: 298만원 이하 4인 : 318만원 이하 5인 : 338만원 이하 6인 : 358만원 이하</p> <p><농어촌 지역> 3인까지: 333만원 이하 4인 : 353만원 이하 5인 : 373만원 이하 6인 : 393만원 이하</p>	<p>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p> <p>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p>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이전담(통합)시설 350,000원 기타시설:	이전년도와 동일		

구분	지원단가	지원대상	비고
	해당반별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만0세미만 : 105천원 만 1세 : 92천원 만 2세 : 76천원 만3~5세 : 47천원	3인까지: 333만원 이하 4인 : 353만원 이하 5인 : 373만원 이하 6인 : 393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시간제 및 기준 시간 초과 보육료 등 지원	시간연장제 보육 -17,000원/시간당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보육	만0세 361,000원 만1세 317,000원 만2세 262,000원 만3세 180,000원 만4세 162,000원	1층(100%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및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2층(100%지원) -3인 116만원 이하 -4인 144만원 이하 -5인 168만원 이하 -6인 193만원 이하 3층(80%지원) -3인 165만원 이하 -4인 184만원 이하 -5인 197만원 이하 -6인 217만원 이하 4층(50%지원) -3인 231만원 이하 -4인 258만원 이하 -5인 269만원 이하 -6인 288만원 이하 5층(20%지원) -3인 334만원 이하 -4인 369만원 이하 -5인 384만원 이하 -6인 411만원 이하	1층 법정 저소득층 2층 최저생계비 120% 3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4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5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기본보조금 지원 (만간시설) 만0세 292,000원 만1세 134,000원 만2세 86,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62,000원	3인까지:334만원이하 4인 : 369만원이하 5인 : 384만원 이하 6인 : 441만원 이하	* 이전년도와 다르게 지역구분이 없음
장애아 무상보육료	자격조건은 이전 년도와 동일 교사 대 아동비율 1:3 준수시설: 361,000원 기타시설: 해당반별 보육료		부모의 소득 수준 과 무관
두자녀 보육료	만0세 : 181천원 만1세: 159천원 만2세 : 131천원 만3세 : 90천원	3인까지: 334만원 이하 4인 : 369만원 이하 5인 : 384만원 이하	

2007

구분	지원단가	지원대상	비고	
시간제 및 기준 시간 초과 보육료 등 지원	만4세 : 81천원	6인 : 411만원 이하		
2008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보육료	<p>만0세 372,000원 만1세 327,000원 만2세 270,000원 만3세 185,000원 만4세 167,000원</p> <p>*기본보조금 지원 (민간시설)</p> <p>만0세 340,000원 만1세 164,000원 만2세 109,000원 만3세 이상 45천원</p>	<p>1층(100%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및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p> <p>2층(100%지원) -3인 178만원 이하 -4인 199만원 이하 -5인 210만원 이하 -6인 230만원 이하</p> <p>3층(80%지원) -3인 250만원 이하 -4인 278만원 이하 -5인 294만원 이하 -6인 322만원 이하</p> <p>4층(60%지원) -3인 250만원 이하 -4인 278만원 이하 -5인 294만원 이하 -6인 322만원 이하</p> <p>5층(30%지원) -3인 357만원 이하 -4인 398만원 이하 -5인 420만원 이하 -6인 460만원 이하</p>	<p>1층 법정저소득 층</p> <p>2층 최저생계비 120%</p> <p>3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p> <p>4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p> <p>5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p>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67,000원	3인까지:357만원이하 4인 : 398만원 이하 5인 : 420만원 이하 6인 : 46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 균 소 득 100% * 지역구분 없음
	장애아 무상보육료	자격조건은 이전 년도와 동일 교사 대 아동비율 1:3 준수하고 전담교사 (통합교 사) 배치 : 372,000원 기타시설: 해당반별 보육료		부모의 소 득 수 준 과 무관
	두자녀 보육료	만0세 : 186천원 만1세 : 164천원 만2세 : 135천원 만3세 : 93천원 만4세 : 84천원	3인까지: 357만원 이하 4인 : 398만원 이하 5인 : 420만원 이하 6인 : 46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 균 소 득 100%
	시간제	시간제 보육 -법정저소득층아동 2600원/시간당 -장애아동 3,500원/시간당		

구분	지원단가	지원대상	비고	
시간 연장형	-지원액: 월 60시간 -비장애아동 2,300 원/시간당 -장애아동 3,300원/ 시간당	시간 연장 지정시설 이용아동 *비지정시설 이용자는 1층과 장애인만 지원		
방과후 보육료	법정저소득층 · 2층 및 장애아동		일반 저소득층 지원 불가	
2009	차등보육료	-소득수준, 연령, 정 부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라 차등 -월 52천원~733천 원	-소득하위 60%이하 지원단가의 100%지원 -소득 50%이하 60%지원 -소득 하위 70%이하 30%지원	※민간시설에 지급되었던 기본보조금 시설지원금으로 분리되어 흡수.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월 167천원	소득하위 70%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월 372천원 또는 수납한도액	만 12세 이하 장애아 (종일보육, 방과후 지원)	
	두자녀 보육료	정액지원(186-84천 원, 연령별)	소득하위 70%이하, 보육시설 이용 둘째 이상 아동 모두 지원	
	시간연장형	시간당 2300원 ~ 정부 지원 단가의 150%까지	-도시근로자가구소득 100%까지	
맞벌이 가구	-2010년 도입 예정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차 감시 소득분위 아동 가구		

자료: 1999년~2009년 보육사업안내 각 년도 자료 이용, 보건복지가족부

1. 보육료 지원 사업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지원을 위한 수요자측면의 보육료지원정책은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바우처의 형태로 제공한다. 아동의 보육료에 대해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단, 만 5세 아동에겐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육정책이 시설을 바탕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가정의 경우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

생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9년 7월 이후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을 둔 일정소득 이하(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가정을 위한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육료 지원 사업은 차등 보육료 지원 뿐 아니라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있으며, 또한 휴일에 보육시설을 이용해 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의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보육도 이에 포함).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복지부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만 3-5세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비지원사업 명목 하에 수행하고 있다. <표 2-2>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 사업은 그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폭이 점차적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지원대상의 경우 대상자 확대를 위해 도시근로자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5차로 나누어 지급했던 이전과 달리 2009년 지원비율(100, 60, 30)에 따라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및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2010년 도입예정) 등의 세부사업의 추가가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양육비 부담의 이유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를 돕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두자녀 보육비 지원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각 지원은 중복지원 불가의 원칙에 따라 수혜자에 의해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보육지원정책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차등보육료

차등보육료 지원은 만 0-4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 수준별로 보육료를 정률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법정저소득층 아동과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으로 구분된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되는 모·부자 가정아동,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 3~4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2)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대상은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라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들 지원대상은 다시 가구 소득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표 2-3>은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인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여준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월소득을 더해 책정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기준의 산정식과 동일하다.

〈표 2-3〉 차등보육료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지원 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영유아 100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이하	224	258	289	316
영유아 60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영유아 30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주: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를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함.
자료: 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 안내, 개정판.

- 1)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0~만2세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에 한함

차등보육료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하는 소득구분 기준은 2009년 하반기부터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층 (법정 저소득층)에서 5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까지였던 것이, 소득하위 50%, 60%, 70%를 기준으로 영유아 100에서 영유아 30으로 변경되었다. 보육료 지원액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인 ‘영유아 100’은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가구인 ‘영유아 60’은 정부지원단가의 60%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인 ‘영유아 30’은 정부지원단가의 30%를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지원단가는 자녀의 연령과 시설종별에 따라 상이하므로 가구소득, 아동연령,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표 2-4〉 차등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단위: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영유아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정부지원단가 100%	만0세	383,000	383,000	574,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영유아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이하	정부지원단가 60%	만0세	229,800	229,800	344,700
			만1세	202,200	202,200	303,300
			만2세	166,800	166,800	250,200
			만3세	114,600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영유아 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정부지원단가 30%	만0세	114,900	114,900	172,35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57,300	85,950
			만4세	51,600	51,600	77,400

자료: 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 안내, 개정판.

나) 두자녀이상 보육료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첫째아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아가 취약 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둘째아이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두자녀가 동시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소득하위 50%층이거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표 2-5>와 같다.

<표 2-5> 두자녀이상 보육료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지원 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두자녀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두자녀	30	영유아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단위: 천원)

주: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를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함.
자료: 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 안내, 개정판.

두자녀 이상 보육료의 정부지원단가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인 ‘두자녀 60’ 대상이 보육료의 40%를,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인 ‘두자녀 30’ 대상이 보육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단가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종일반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서 차등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

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차등보육료와 두자녀이상보육료 합산)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간연장형과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 보육료는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추가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차등보육료만 지원이 가능하다.

〈표 2-6〉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
두자녀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이하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두자녀 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50%	만0세	191,500
			만1세	168,500
			만2세	139,000
			만3세	95,500
			만4세	86,000

자료: 보육사업안내, 2009 보건복지가족부

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중인 만5세아도 지원된다. 취학대상에서 제외된 '03.1.~2.28일 생아동은 만 5세 무상보육료가 지원되며 '04.1.1~2.28일 출생아동이 반 편성 특례에 의해 만5세아 반에 편성된 경우도 무상보육료 지원된다(2010년에도 반 복하여 만5세아반에 편성되는 경우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하지 않는다). 선정기준은 다음 <표 2-7>과 같다. 그러나 만 5세아 무상보육 대상자는 아동보호자에 대한 추정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소득 및 재

산 조사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다.

〈표 2-7〉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지원 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신만5세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주: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를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함.
 자료: 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 안내, 개정판.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정액(172천원)으로 지원된다. 특히 법정저소득층 만5세아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이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액을 수납하지 않으며, 만5세아 지원아동에 대한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단가는 소득하위 50%이하 정부지원단가로 정하고 있다.

라) 장애아 무상보육료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0세~만 5세이하 장애아동에 해당되지만,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 0~2세)와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장애아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역시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된다(단, 취학유예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장애아가 부득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만 12세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나 취학유예 및 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장애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총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도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로 지원 가능하다. 진단서의 경우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로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383천원이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다.

마)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는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³⁾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단가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구분이 있다. 먼저 일반아동은 정부지원단가(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장애아동은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50%(191,500원)이 정액 지원된다. 만약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학동안 종일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아동(만5세아 보육료)과 장애아동(장애아 무상보육료)의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3)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보육시설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보건복지부, 2009년도 보육사업 안내).

〈표 2-8〉 방과후 보육료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천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19	137	154	168

주: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를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함.
 자료: 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 안내, 개정판.

바)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시간제,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는데,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한다. 시간연장형,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지원금액은 ‘지원계층 및 지원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첫째, 법정저소득층(1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한도액 초과 수납금지 한다. 둘째,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차등보육료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하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1층)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도록 한다(취학아동은 24시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셋째, 시간제 보육료는 영·유아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한해 지원한다(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불가). 시간연장 보육료는 기준시간 초과인 경우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은 34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을 지원하고 있다.

〈표 2-9〉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원)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소득하위50%	2,400	144,000	기준액×100%
소득하위60%	1,440	86,400	기준액× 60%
소득하위70%	720	43,200	기준액× 30%

자료: 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 안내, 개정판.

야간 보육료는 야간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하여 지원하는데,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야간 보육료 지원은 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야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는 차등보육료 지원 단가표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에 휴일 보육료는 정부지원의 일(日) 보육료의 150%를 지원한다. 일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와 휴일보육일수를 공휴일을 제외한 보육가능일수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휴일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의 100%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시간제 보육료는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한하여 일반 아동 2600원, 장애아동 3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2.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크게 인건비지원이 주를 이루는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지원, 교재 교구비 및 차량운영비지원이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시설운영비지원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09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

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금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민간시설 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니다.

인건비 지원에 있어 신축비 국고지원 국공립시설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하며 200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설치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법인전환시설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 없이는 인건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년 3월 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인건비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건비 지원 승인을 받지 못한 법인시설 등은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시설에 지급되었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국·공립 시설과 민간 차원에서 지원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 <표 2-9>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지원정책의 방향들이 국·공립 시설에 치중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먼저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반면 유아반 교사의 인건비는 30%를 지원하고, 방과후반 교사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교사에게 대한 대체교사 인건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으나 출산휴가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통상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대체교사를 채용할 경우 출산휴가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지역 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및 취사부 1명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보육교사 1인의 월 지급액 100%

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시설은 취사부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경우 미취학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미취학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취학장애아동이 현원 18명 이상이고 6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원장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는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사대 아동비율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의 경우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의 경우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의 80%를, 민간지정시설의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을 받고 있다. 원장 및 소요현원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원장 인건비 지원은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보육교사는 0세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1세반의 경우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2세반의 경우 아동 7명을 기준으로 4명까지

지원된다. 이 외에도 취사부 1명에 대해서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표 2-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시설의 인건비 지원

구분	국공립·법인시설 등	장애아 전담시설	영아전담시설	시간연장·24시간·휴일·방과후 시설	
원장	인건비 80% 지원 (21인 이상 시설)	인건비 80% 지원 (현원이 18명 이상, 6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인건비 80% 지원 (18명 이상 시설)		
보육교사	0세반	아동 3명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아동 3명 기준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2명 까지 월지급액의 80% 지원 (※ 9명당 1명의 치료사 월지급액의 100% 지원) -방과후 보육은 월지급액의 100% 지원	아동 3명 기준 2명까지 지원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민간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19시 30분 이후까지 시간연장 보육아동 3명 이상 보육할 경우)
	1세반	아동 5명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아동 5명 기준 3명까지 지원	
	2세반	아동 7명 기준으로 4명까지 지원		아동 7명 기준 4명까지 지원	
	3세반	아동 15명 기준 8명까지 지원			
	4세반	아동 20명을 기준 11명까지 지원			

주: 영아반 2개 이상 보육시설에 한해 인건비의 80% 지원 (단, 농어촌지역 및 24개월 미만 영아반은 1개반이라도 80% 지원) 하며 유아반 교사의 경우 인건비의 30%를 지원함.

자료: 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 안내, 개정판.

나)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 및 보육시설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도모하고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크게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애아보육 환경개선(2009년 신설) 등이 있다. 보육시설 확충은 국공립시설 신축과 시설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 개원 예정인 국공립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등으로 이루어진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보육시설의 증·개축비, 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하거나 장비비를 지원하여 노후화된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위해가 될 수 있는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09년에 신설된 장애아 보육 환경개선은 『장애인차별금지법(08년 4월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육시설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의 개·보수,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 차량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과 국공립, 법인, 민간지정 정부지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연 2400천원(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보육시설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장애아전담 지정시설 및 영아전담지정 시설 등 정부인건비지원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재교구비는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는데 61인 이상 시설은 연간 1200천원, 40~60인 이하 시설은 연간 10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은 연간 9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은 연간 800천원, 3~9인 이하 시설은 연간 500천원이다.

3. 보육정책 관리 감독을 위한 지원

가) 보육인프라구축

보육사업 지침 발간 및 보육담당 공무원 교육 및 국민의식 개선 및 제도홍보 등과 보육료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연구 및 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보육사업관리를 돕는다. 또한, 중앙보육정보센터운영, 지방보육정보센터, 시설장·보육교사자격관리,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 교육비용 지원)등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질을 높이며 인력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 특성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 취약아동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보육시설의 시스템 측면의 강화를 위해 보육행정시스템구축, 보육료지원체계개선(전자바우처), 보육실태조사, 농어촌취약지역 소규모 보육(신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지원(신규) 등과 같은 사업들을 지원한다.

나) 보육시설평가인증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시설평가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평가인증제도는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마련과 부모들의 합리적 보육시설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방과후전담 보육시설을 제외한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규모 및 유형별로 3종의 인증지표를 토대로 4년의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인증 지표는 40인이상 보육시설과 39이하 보육시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지표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40인이상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7개 영역 80항목에 대한 지표가 수립되어 있다. 39인 이하 보육시설의 경우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의 5개 영역 60항목에 대한 지표가 수립되어 있다. 장애인 전담시설의 경우 7개영역 85항목의 지표가 있다. 평가인증과정은 다음의 [그림 2-1] 과 같이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2-1]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 과정



자료: 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 안내, 개정판.

4. 양육수당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정부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126만명, 44%, '07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입('09,7월)된 양육수당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만 0-1세 영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수당 대상 가구는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 소득 인정액 159만원 이하의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양육수당은 보육지원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동들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일반 저소득층 영유아들 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자녀, 입양자녀, 장애아동 등도 해당된다.

〈표 2-11〉 양육수당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천원)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만0-1세	129	159	188	218

주: 7인 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자료: 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 안내, 개정판.

제3절 보육재정 현황 및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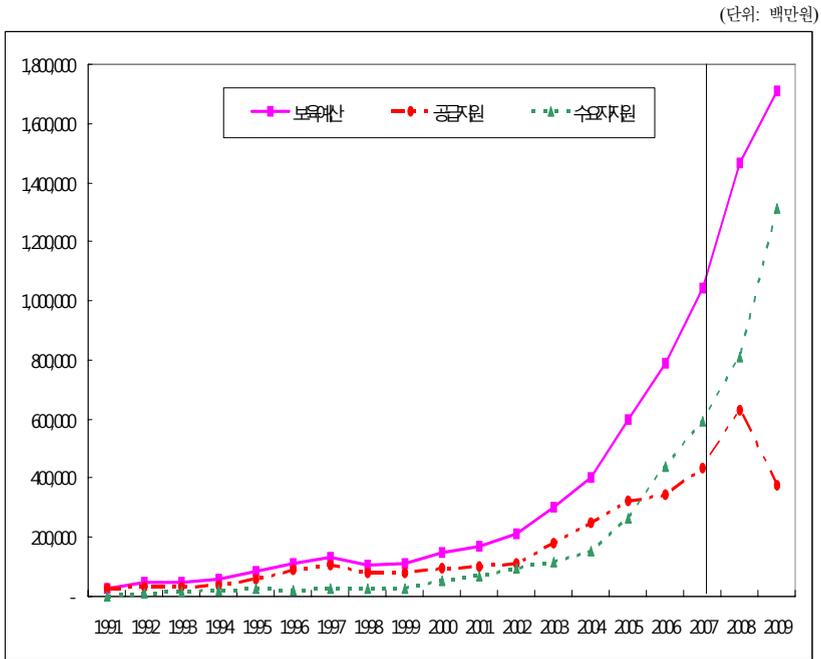
1. 보육재정

보육지원정책의 예산은 사업의 확대와 정책의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7년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15억원)에 불과하던 보육예산은 보육시설 지원사업의 도입으로 1990년에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135억원). 또한 1992년에는 급식비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이 도입되면서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다(455억원).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IMF 이후 여성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기되면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함께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시설 중심의 지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자 보육지원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2005년을 기점으로 공급자 중심 지원의 우위는 수요자 중심 지원과 역전되었다. 공급자 중심의 지원 비율 감소는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만 3-5세 아동 수에 비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서로 양적 확대를 이루면서 시설 공급율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회문화적 분위기 때문에 어린 영아에 대

한 보육시설 이용률은 낮아 선행연구들은 보육시설의 설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변용찬 외, 1998). 보육지원정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참여 정부시절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 전년 대비 보육예산의 증감액이 896억원 증액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집권 내내 가속화되어 집권 말인 2007년 보육예산은 전년 대비 2,525억원이나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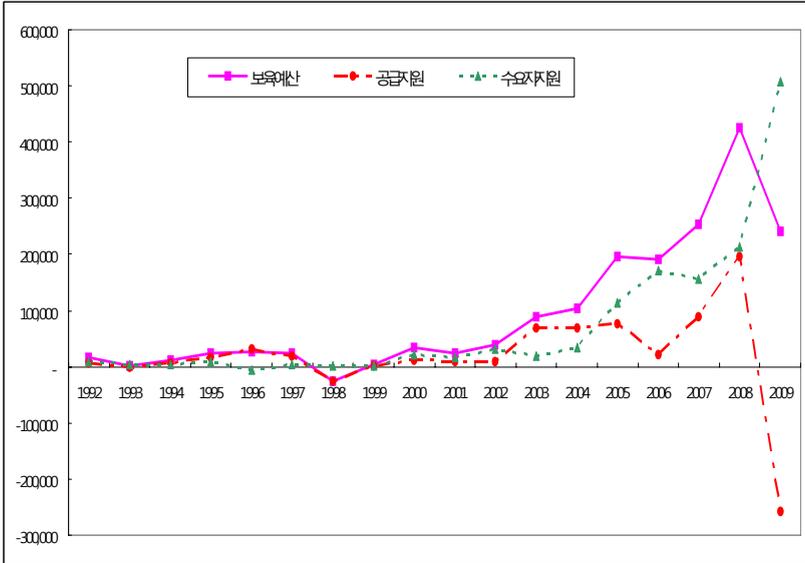
[그림 2-2] 보육예산의 증가 추이(1991-200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및 기금 운용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보건복지예산 현황과 전망 2008.

[그림 2-3] 보육예산의 증감액 추이(1991-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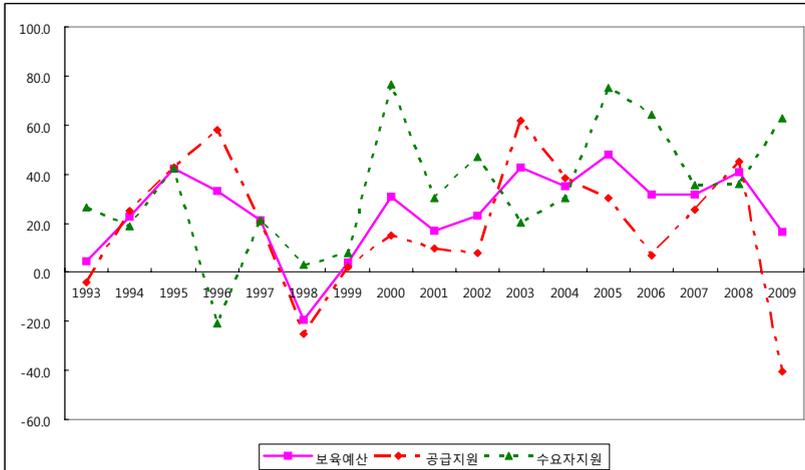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및 기금 운용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보건복지예산 현황과 전망 2008.

[그림 2-4] 보육예산의 증가율 추이(1991-2009)

(단위: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및 기금 운용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보건복지예산 현황과 전망 2008.

보육사업 지원 예산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및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은 보육전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 반면, 시설운영비와 아동 보육비 지원은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종전의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심이었으나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시설유형과 무관하게 다양한 형태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운영비는 시설 유형에 따라 차별화되어 지원되고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별 지원은 주로 국공립 및 법인 시설에, 보육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 등을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 2006년 이후 민간시설 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민간시설에 제공되는 영아기본보조금('09년 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변경)이 등장함으로써 그간 시설별 지원에서 제외되어왔던 민간시설이 보조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저소득 아동을 위주로 지급되었던 보육료 지원에 소득계층과 상관없는 보조액이 들어오게 되었다.

대표적인 시설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영아와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에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부터 도입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도의 정책체감도가 낮아 2009년부터 차등보육료지원사업에 통합됨으로써 시설지원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1992년부터 시작된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 0-5세에 대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은 2000년 만5세아 무상보육 도입과 함께 0-4세 차등보육료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03년 장

애아 무상보육, 2005년 두자녀 이상 이용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국공립 및 법인의 보육시설 설치,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보육전산망 구축 등 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보육시설증別に 상관 없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보육인력 자격관리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2-12〉 보육정책 예산추이

(단위: 백만원)

년도	1991	2001	2003	2008	2009
보육예산	28,395	170,563	299,939	1,468,370	1,710,430
공급지원 ¹⁾	26,049	103,030	179,983	632,549	376,123
수요자지원 ²⁾	2,346	66,254	117,143	807,851	1,314,558
보육인프라 구축	-	733	1,735	5,393	16,348
정책관리 및 평가 ³⁾	-	546	1,078	11,987	3,401

주: 1) 시설지원에는 보육시설운영지원과 보육시설기능보강,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사업이 포함됨

2) 대상지원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사업이 포함됨.

3) 정책관리 및 평가에는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보육 및 가족정책 국민의식 개선 사업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및 기금 운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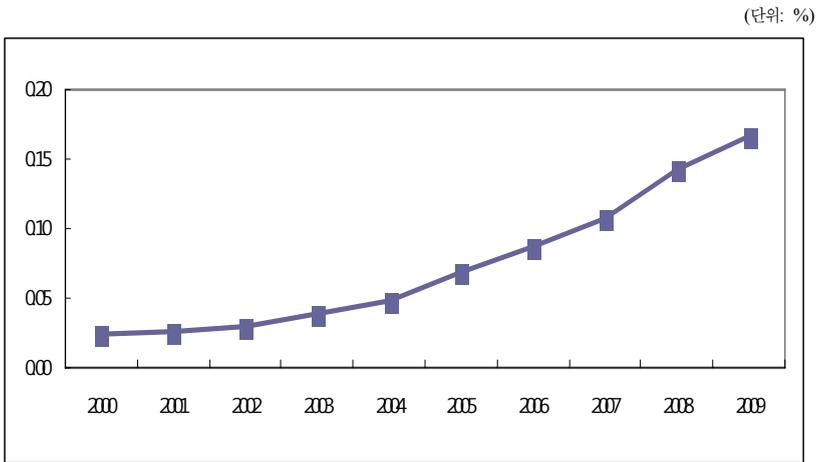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보건복지예산 현황과 전망 2008.

보육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2000년 0.02에서 2009년 0.17로 약 9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02년의 예산 비율에 비해서 2008년 이후의 예산 비율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GDP 대비 보육예산의 증가는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2-13〉 GDP 대비 보육예산의 증가 추이(1991-2009)

(단위: 억원, %)					
년도	1991	1995	2000	2005	2009
GDP	2,260,076	3,988,377	6,032,360	8,652,409	10,240,675
보육예산	284	830	1,460	6,001	17,104
보육예산/GDP	0.01	0.02	0.02	0.07	0.17

[그림 2-5] GDP 대비 보육예산의 증가 추이(2000-2009)



2. 보육정책 전달체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들 사이, 그리고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조직적인 배열과 배치과정이며 (Gilbert & Specht, 1974), 사회복지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사회적·조직적 환경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적·사적 조직을 포함한다. 이들 조직들 사이의 연계와 변화, 조직과 이용자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며,

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졌을 때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허선 외, 2003; 변용찬 외,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는 보육서비스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서비스 공급자들(공공 및 민간)과 이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 등을 포함한다. 즉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립 및 민간 보육서비스 제공기관들과 이들을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뜻한다. 보육사업의 정책적 지침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가 잘 구성되어야 한다.

변용찬 외(1998)는 보육정책 전달체계를 행정체계와 집행체계, 지원체제로 구분하고 있다. 즉 전달체계는 좁은 의미에서 “서비스 전달자와 수혜자와의 일정한 장에서 대면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직접 만나게 되는 집행체계”이고 “집행체계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감독을 받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전달체계에는 행정체계가 포함되는 것이다.”(변용찬 외, 1998; 성규탁, 1992). 그러나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기관 등은 행정체계나 집행체제로 분리하기 어려워 보육지원체계”로 구분하였다. 허선 외(2003)는 보육정보센터 등과 같은 보육기관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자원관리 체계들은 전체 공공복지행정체계 속에서 관리되는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를 집행체계와 관리체제로 구분하고 있다.

집행체계란 일정한 장소 내에서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사회적 체계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집행체계의

상부에는 집행체계에 대한 규제, 지원, 관리 및 감독을 행하고 서비스 전달을 기획하는 관리(정책)체계가 있다. 즉 현재의 보육정책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광역시·도→시·군·구→보육시설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에 이르기까지의 체계는 보육 사업을 계획, 지시, 지원,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관리체계이며, 보육시설은 집행체계인 것이다.

가) 행정체계

보육정책의 행정체계 상위에는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동일한 행정체계가 교육부를 정점으로도 존재하고 있다. 즉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한편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장단기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보육 및 유아교육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부처 협의를 통해 영유아가 이용 시설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노동부 소관이므로 실질적으로 보육정책은 3개 소관부처(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의 협의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포괄적이며 대표성을 띠는 보건복지부의 보육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보육정책의 행정체계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확대·발전하였는데, 주관부처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가(2004년), 다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2008년)되는 등 변동이 잦았지만 보건복지부(혹은 여성부)를 정점으로 시·도→시·군·구

→읍·면·동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변화가 없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의 행정체계 역시 교육과학기술부를 정점으로 시·도 교육청→지역교육청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육행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행정은 아동의 연령 및 종사자 수준, 시설 설치 기준 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아동에 대한 지원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보육위원회는 구체적인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이다. 중앙에는 보건복지부 내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시·도 및 시·군·구에는 지방보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먼저 중앙보육위원회는 보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과 보육사업의 조사연구,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등을 심의한다. 다음으로 시·도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보육정책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 보육시설의 비용수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현재 중앙보육정보센터 1개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 5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표 2-14〉 지방보육정보센터 현황

(단위: 개소)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인천	경기
17	1	1	1	1	1	3	14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2	1	1	2	2	1	1	1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educare.or.kr>).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는 일정 수준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는 종사자로 이루어진다. 먼저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센터장 1명과 보육전문요원 2명, 전산지도원 1명,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 등 상근 종사자가 최소 5인이상이어야 하며, 지방보육정보센터는 센터장 1명과 보육전문요원 2명, 전산지도원 1명,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 등 상근 종사자가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표 2-15〉 보육정보센터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단위: 명)

구분	종사자수	자격요건	비고	
센터장	1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 등 아동 복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근	
사업 전담 인력	보육전문요원	- 보육교사 2급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상근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산지도원	1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전산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근
	영양사	1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영양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근
간호사	1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간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근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educare.or.kr>).

이 외에도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경영자 및 교사 등에게 새로운 보육 정보를 습득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이나 일정한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는 보육교사교육원과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등의 보육시설단체와 한국보육진흥원(2010년 2월 설립) 등 보육정책의 지원체계가 있다.

나) 집행체계

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만나는 곳으로 전달체계의 최일선이다(변용찬 외, 1998). 먼저 보육시설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 부모협동 봉규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로 구분된다. 먼저 국공립 보육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이며, 법인 보육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이며, 부모협동 보육시설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이다. 가정 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이며, 직장 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이고, 민간 보육시설은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법인 외 보육시설과 민간 개인 보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설치 현황은 가정보육시설도 46.3%로 가장 비중이 크며, 민간 개인보육시설도 39.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2-16〉 주체별 보육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법인외	민간개인			
시설수	33,499	1,826	1,458	969	13,306	65	15,525	350
구성비	100.0	5.5	4.4	2.9	39.7	0.2	46.3	1.0

주: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최근에는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보육시설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설로는 영아전담보육시설과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이 있다. 영아전담보육시설은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 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 받은 시설이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이다. 이와 유사하게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은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는 시설이다.

보육시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설로는 시간연장 보육시설과 24시간 보육시설, 휴일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이 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기준보육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이며, 24시간 보육시설은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가정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또한 휴일 보육시설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고, 방과후 보육시설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수보육시설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연장보육시설이 5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방과후보육시설과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영아전담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7〉 특수보육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시설수	6,606	665	160	756	838	3,910	152	125
구성비	100.0	10.1	2.4	11.4	12.7	59.2	2.3	1.9

주: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다) 보육지원과 전달체계

보육지원정책에서 전달체계는 보육서비스의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사이를 연계해줄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형평성과 재분배적 성격을 강화하도록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시설운영비 지원과 아동 보육료 지원 등에서 전달체계의 각 요소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협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육료 지원은 먼저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가 관할 읍·면·동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보육료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통보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또는 보육료 지원관청에 제출하고, 시설장은 관할 시·군·구에 매월 보육료를 일괄 신청한다. 시·군·구청장은 아동의 신청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의 전용 입금통장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고, 해당 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자 대장에 기재하고 전산을 통해 관리한다.

만약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과 보육시설의 관할 시·군·구가 다를 경우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에서 해당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월(月)중에 아동의 주소지가 이전될 경우 구 주소지 관할 관청과, 신 주소지 관할 관청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원한다. 아동의 보호자가 신주소지 관할 관청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보육료가 지원되며 지원 신청서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과에 따라 소급 지원하도록 한다(신청서 미제출시 보육료 지원 중단). 이 때 지원절차는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이 다니는 시설의 시설장이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을 요구하면,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을 확인한 후 시설장에게 아동별 지원대상 및 보육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별 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보하고 교부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안내).

보육시설별 지원은 크게 인건비 지원과 보조금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09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단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보조금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해 신청해야하며, 인건비는 재무 회계규칙에 의해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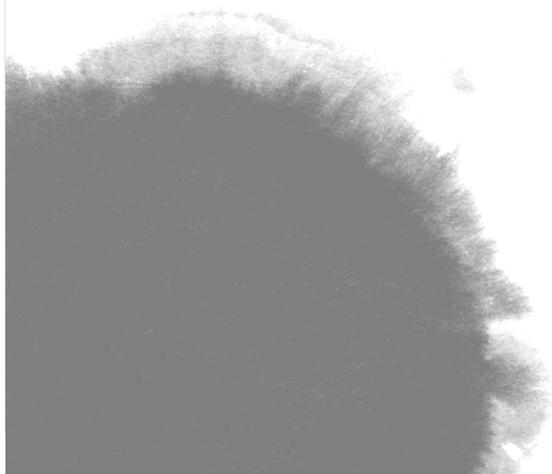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시설에 대해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시·군·구청자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장애아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에 정부지원의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지정민간 시설에 대한 기본보육료의 경우 전달체계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기본보조금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영아가 보육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보육시설에서는 매월 영아 기본보조금을 e-보육을 통하여 시·군·구에 신청, 시군구에서 이를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한국개발연구원, 2007).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지급처리가 안되므로 해당시, 군, 구에서 수기로 처리하되 시간제 보육료 지원대상이 있는 시·군·구는 필요한 금액만큼을 예탁하지 않고 남겨 두거나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부터 이미 예탁한 지원금에서 환수 받아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양육수당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양육수당지원 신청서’ 및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03

보육시설 이용현황 및 보육비 분석



제3장 보육시설 이용현황 및 보육비 분석

제1절 보육시설 이용 현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08년 12월말 기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대상 연령 아동(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은 약 283만명이며, 이 중 약 39%의 5세 미만 아동 1,135,502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에는 제외 되었지만, 방과 후 보육시설의 경우 1007개소, 17천명('07.12) 아동이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시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 12월 말 기준 33,499개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별 비중은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보육시설은 1990년대 초반까지 2,000개에 못 미쳤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오늘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보육시설은 법인 외 보육시설과 민간 개인 보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 민간보육시설의 수 역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12월말 기준 14,275개소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민간개인시설(13,306개소)이며, 법인 외 시설은 969개소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차지하고 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그 증가폭이 크지는 않다. 이는 국공립의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지원 확대에 따른 시설지원의 축소에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법인 보육시설의 경우 1990년대는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작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및 육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고려하면 향후에도 직장보육시설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부모협동보육시설은 2005년 이후에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는 매우 적다.

〈표 3-1〉 연도별 보육시설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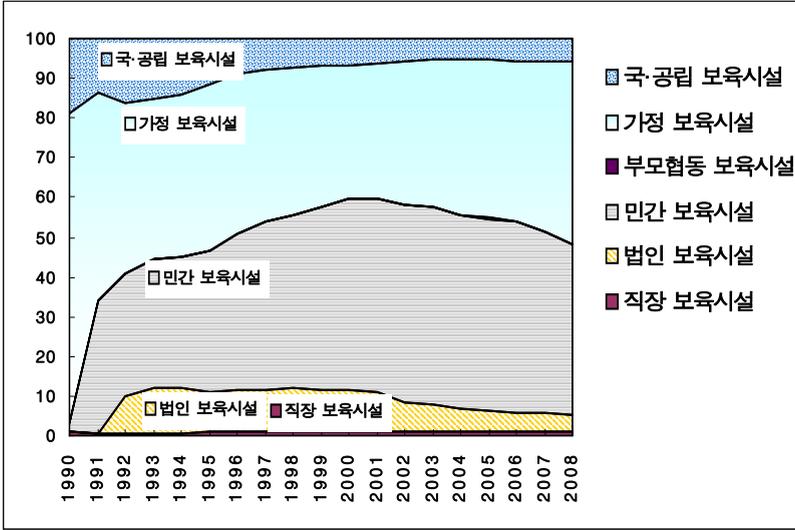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기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1990	1,919	360	미분류	39	미분류		미분류	1,500	20
1991	3,690	503	미분류	1,237	미분류		미분류	1,931	19
1992	4,513	720	425	1,383	14	1,369	미분류	1,957	28
1993	5,490	837	624	1,795	19	1,776	미분류	2,205	29
1994	6,975	983	807	2,284	17	2,267	미분류	2,864	37
1995	9,085	1,029	928	3,197	22	3,175	미분류	3,844	87
1996	12,098	1,079	1,280	4,757	69	4,688	미분류	4,865	117
1997	15,375	1,158	1,634	6,538	150	6,388	미분류	5,887	158
1998	17,605	1,258	1,927	7,695	227	7,468	미분류	6,541	184
1999	18,768	1,300	1,965	8,593	266	8,327	미분류	6,703	207
2000	19,276	1,295	2,010	9,294	324	8,970	미분류	6,473	204
2001	20,097	1,306	1,991	9,803	313	9,490	미분류	6,801	196
2002	22,147	1,330	1,633	11,046	575	10,471	미분류	7,939	199
2003	24,142	1,329	1,632	12,012	787	11,225	미분류	8,933	236
2004	26,903	1,349	1,537	13,191	966	12,225	미분류	10,583	243
2005	28,367	1,473	1,495	13,748	979	12,769	42	11,346	263
2006	29,233	1,643	1,475	13,930	1,066	12,864	59	11,828	298
2007	30,856	1,748	1,460	14,083	1,002	13,081	61	13,184	320
2008	33,499	1,826	1,458	14,275	969	13,306	65	15,525	350

주: 200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통계.

[그림 3-1] 연도별 보육시설 설치·운영현황

(단위: %)



<표 3-2>는 연도별 보육시설의 보육이동 현황을 나타낸다. 보육시설 이용이동은 1990년에서 1991년 사이 약 2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2월말 기준 1,135,502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아동 수는 앞에서 살펴본 보육시설 수와는 달리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 1,500명이었던 민간보육시설의 아동 수는 1991년 36,099명으로 약 23배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669,465명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민간개인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으며(615,647명), 일부가 법인 외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다(53,818명). 시설수가 가장 많은 가정보육시설의 보육 아동 수는 2008년 기준 210,438명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아동 수의 1/3에 불과하다. 가정보육시설은 주로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육시설 수

에 비해 보육 아동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공립보육시설 역시 보육시설 수에 비해 보육 아동의 수가 많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유사한 규모를 갖춘 법인 보육시설의 보육아동 수 역시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편 직장보육시설의 수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2008년 기준 16,809명으로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의 아동 수보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협동보육시설의 아동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연도별 보육시설 보육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보육 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보육 시설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소계	법인의	민간 개인			
1990	48,000	25,000	미분류	1,500	미분류	미분류	20,000	1,500	
1991	89,441	37,017	미분류	36,099	미분류	미분류	15,613	712	
1992	123,297	49,529	31,243	26,554	785	25,769	15,203	768	
1993	153,270	55,133	44,026	36,374	854	35,520	17,012	725	
1994	219,308	70,937	63,466	56,502	759	55,743	27,427	976	
1995	293,747	78,831	77,187	93,225	591	92,634	42,116	2,388	
1996	403,001	85,121	99,119	156,725	2,735	153,990	58,440	3,596	
1997	520,959	89,002	123,567	234,678	6,727	227,951	68,467	5,245	
1998	556,957	91,260	141,616	259,290	9,290	250,000	58,968	5,823	
1999	640,915	99,866	151,652	314,825	13,195	301,630	67,294	7,278	
2000	686,000	99,666	157,993	352,574	15,949	336,625	67,960	7,807	
2001	734,192	102,118	161,419	385,527	16,483	369,044	77,247	7,881	
2002	800,991	103,351	142,035	455,936	30,289	425,647	90,939	8,730	
2003	858,345	103,474	140,994	499,551	37,911	461,640	103,935	10,391	
2004	930,252	107,335	135,531	555,812	48,414	507,398	119,787	11,787	
2005	989,390	111,911	125,820	608,734	56,374	552,360	933	129,007	
2006	1,040,361	114,657	120,551	641,137	58,808	582,329	1,238	148,240	
2007	1,099,933	119,141	118,211	668,390	55,906	612,484	1,444	177,623	
2008	1,135,502	123,405	113,894	669,465	53,818	615,647	1,491	210,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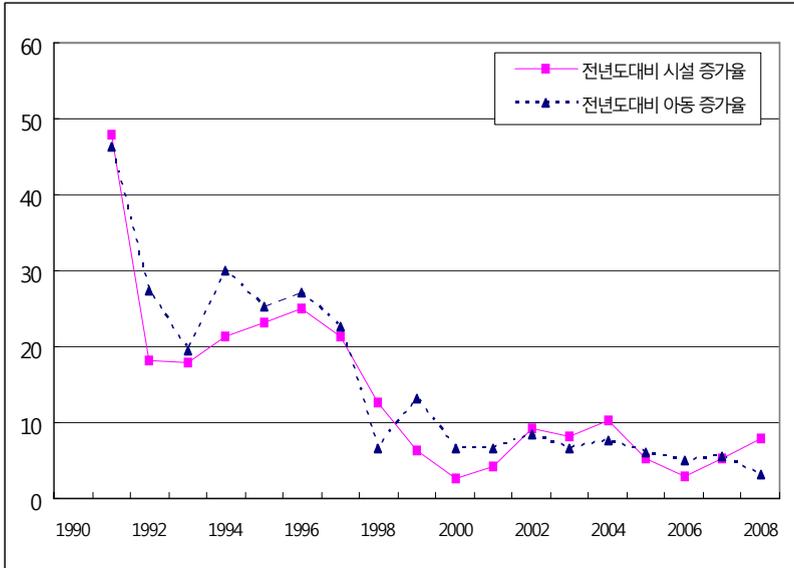
주: 200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통계.

전년 대비 아동 및 시설 수의 증가율은 아래 [그림 3-2]와 같다. 1997년 이전에는 전년 대비 아동 수의 증가율이 시설 수의 증가율을 상회한 반면, 보육시설이 폭발적으로 확대된 시기인 1999년 근처와 2002년 근처에서는 시설 수의 증가가 아동 수의 증가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증가율이 시설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림 3-2] 전년 대비 아동 및 시설 수 증가율

(단위: %)



주: 200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통계.

<표 3-3>은 1990년~2008년까지 시설 수 대비 아동 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0년대에 시설 수 대비 아동 수는 점차 증가하다가 200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조금씩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의 경우 시설 수 대비 아동 수가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설의 공급 대비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또한 민간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의 시설 수 대비 아동 수 현황은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협동보육시설과 가정보육 시설은 시설 수 대비 아동 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10~20%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인보육시설의 경우 시설 대비 아동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추세는 다소 변동적이거나, 2005년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8년

에는 시설 대비 약 78명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민간보육시설에서 가장 많았으나, 시설대비 아동수의 경우, 2008년 기준 약 47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 수는 적고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많은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기준 시설당 48명의 아이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대비 아동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가정보육시설로 그 수는 시설당 10명 안팎으로 나타났다.

〈표 3-3〉 시설 대비 아동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보육 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보육 시설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 개인			
1990	25.0	69.4	미분류	38.5	미분류	미분류	미분류	13.3	75.0
1991	24.2	73.6	미분류	29.2	미분류	미분류	미분류	8.1	37.5
1992	27.3	68.8	73.5	19.2	56.1	18.8	미분류	7.8	27.4
1993	27.9	65.9	70.6	20.3	44.9	20.0	미분류	7.7	25.0
1994	31.4	72.2	78.6	24.7	44.6	24.6	미분류	9.6	26.4
1995	32.3	76.6	83.2	29.2	26.9	29.2	미분류	11.0	27.4
1996	33.3	78.9	77.4	32.9	39.6	32.8	미분류	12.0	30.7
1997	33.9	76.9	75.6	35.9	44.8	35.7	미분류	11.6	33.2
1998	31.6	72.5	73.5	33.7	40.9	33.5	미분류	9.0	31.6
1999	34.1	76.8	77.2	36.6	49.6	36.2	미분류	10.0	35.2
2000	35.6	77.0	78.6	37.9	49.2	37.5	미분류	10.5	38.3
2001	36.5	78.2	81.1	39.3	52.7	38.9	미분류	11.4	40.2
2002	36.2	77.7	87.0	41.3	52.7	40.7	미분류	11.5	43.9
2003	35.6	77.9	86.4	41.6	48.2	41.1	미분류	11.6	44.0
2004	34.6	79.6	88.2	42.1	50.1	41.5	미분류	11.3	48.5
2005	34.9	76.0	84.2	44.3	57.6	43.3	22.2	11.4	49.4
2006	35.6	69.8	81.7	46.0	55.2	45.3	21.0	12.5	48.8
2007	35.6	68.2	81.0	47.5	55.8	46.8	23.7	13.5	47.3
2008	33.9	67.6	78.1	46.9	55.5	46.3	22.9	13.6	48.0

주: 200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통계.

<표 3-4>는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이다. 시설 주체별로 살펴보면, 전체 시설 중 가정보육시설이 4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간보육시설이 42.6%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정원 대비 현원을 통한 보육시설 이용률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7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별 직원 수는 오히려 민간보육시설이 51.3%로 가장 높고 가정보육시설은 28.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일정한 상황에서 시설유형별 지원보다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시설 1개당 아동 수는 법인보육시설이 7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약 68명, 직장보육시설이 4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1인당 아동 역시 국공립과 법인, 민간보육시설은 유사하게 나타나나 부모협동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아동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4〉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의	민간개인				
시설수	개소 (비율)	33,499 (100)	1,826 (5.5)	1,458 (4.4)	14,275 (42.6)	969 (2.9)	13,306 (39.7)	65 (0.2)	15,525 (46.3)	350 (1.0)
아동수	정원	1,429,105	141,353	144,158	849,078	66,730	782,348	1,908	269,482	23,126
	현원	1,135,502	123,405	113,894	669,465	53,818	615,647	1,491	210,438	16,809
	이용률	79.5	87.3	79.0	78.8	80.7	78.7	78.1	78.1	72.7
직원수	인원 (비율)	191,103 (100)	17,853 (9.3)	16,572 (8.7)	97,964 (51.3)	7,889 (4.1)	90,075 (47.1)	331 (0.2)	55,169 (28.9)	3,214 (1.7)
시설1개당 아동수		33.9	67.6	78.1	46.9	55.5	46.3	22.9	13.6	48.0
직원1인당 아동수		5.9	6.9	6.9	6.8	6.8	6.8	4.5	3.8	5.2

주: 200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통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그 뿌리에서부터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정부의 지원이 보육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보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도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5>에서 보듯이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제외한 전체 특수보육시설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민간보육시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즉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역시 민간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제외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방과후보육과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등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서만 그 기여가 1/5에서 1/6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특수한 보육시설의 설치와 특수 자격을 갖춘 교사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영아전담이나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1/7에서 1/10 수준으로 그 기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의 설치 비중은 1/2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의 장애아통합보육은 아동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10.5%로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다. 이 뿐만 아니라 시간연장보육 이용률은 8.2%, 24시간보육 이용률은 7.3%, 휴일보육 이용률은 0.1%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영아전담 보육시설과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이용률은 각각 78.2%, 6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시설주체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경향은 국공립보육시설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영아전담과 장애아전담의 경우 시설주체에 상관없이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장애아통합보육은 법인보육시설에서, 방과후보육은 법인의 민간보육시설에서, 시간연장보육은 가정보육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충원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보육시설의 설치와 아동의 실제 이용간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5〉 특수보육시설 이용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총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기정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외	민간개인				
영아 전담	시설수	665	61	229	58	262	55	-	-
	아동정원	30,704	3,110	13,705	2,249	10,548	1,092	-	-
	현원	24,398	2,431	10,136	1,900	8,942	989	-	-
	종사자수	6,323	654	2,446	518	2,378	327	-	-
장애아 전담	시설수	160	29	93	11	26	1	-	-
	아동정원	7,873	1,310	5,072	424	1,047	20	-	-
	현원	6,068	874	3,950	348	876	20	-	-
	종사자수	2,815	425	1,803	167	412	8	-	-
장애아 통합	시설수	756	341	47	39	274	55	-	-
	아동정원	64,360	33,578	5,154	3,269	21,327	1,032	-	-
	현원	3,518	1,704	214	180	1,215	205	-	-
	종사자수	2,534	1,395	186	142	744	67	-	-
방과후	시설수	838	122	98	140	430	46	-	2
	아동정원	63,760	10,529	11,089	7,398	33,741	774	-	229
	아동현원	12,642	2,449	1,306	3,125	5,524	218	-	20
	종사자수	1,748	382	282	337	732	8	-	7
시간 연장	시설수	3,910	564	266	116	1,444	1,494	-	26
	아동정원	197,459	48,595	26,151	9,154	84,112	27,102	-	2,345
	현원	16,278	2,223	1,096	623	8,001	4,287	-	48
	종사자수	12,319	2,533	1,307	595	5,475	2,326	-	83
휴일	시설수	152	34	33	12	41	32	-	-
	아동정원	10,101	2,867	3,351	1,165	2,151	567	-	-
	현원	13	-	-	1	8	4	-	-
	종사자수	198	68	68	23	29	10	-	-
24시간	시설수	125	23	11	2	58	31	-	-
	아동정원	7,480	2,234	1,064	324	3,283	575	-	-
	현원	546	49	69	12	300	116	-	-
	종사자수	416	76	64	13	194	69	-	-

주: 200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통계.

제2절 가계보육비 분석

1. 표준보육비용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정부는 표준보육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부의 지원 단가를 설정하였고, 그 이후로는 매년 물가상승률만 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보육과 관련된 실제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육비 및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단가 결정을 위해 표준 보육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영유아의 연령과 보육 및 유치원 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등 산출하였다(여성부, 2005).

여기서 표준보육비란 “보육시설을 통해 만0세~5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회계학적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일정한 기준에서 영유아를 실제로 보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통해 제공되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운영 비용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만 3~5세의 유아에게는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양 시설의 만 3~5세의 아동관련 비용은 동일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표준비용 산출 구성항목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아동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과 시설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고 현실적인 비용투입수준을 고려해야하므로 영유아의 연령별 차이(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종사자 인건비가 증가)와 시설규모별 차이(시설 규모별로 연령별 학급 수 등에 따라 아동 1인당 보육·교육단가에 차이를 둠), 보육 및 교육서비스 제공시간(종일제와 연장제로 구분

하여 단가 설정)에 따른 차이 등이 표준보육비용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준 보육비는 다음과 같은 산출 모형 매트릭스를 통해 제안 된다. 먼저 표준 보육비의 일반적인 구성항목인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 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구성되고, 다음으로 표준 보육비의 차이가 개입되는 특수항목인 연령, 시설 규모, 서비스 제공시간, 유형 및 지역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산출모형은 2개의 안으로 제시 되는데, 이는 산정비용 간에 차이를 두고 두 비용사이의 구간에서 정부의 재정 상태와 부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부가 보육비 및 교육비 보조금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1안은 현재의 운영비용을 중심으로 산출되었고, 2안은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과 제 법령이나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준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다.

〈표 3-6〉 표준보육비 산출모형

	연령	시설규모	서비스제공시간	유형/지역
종사자인건비	만0세 1:3 만1세 1:5 만2세 1:7 만3세 1:15 만4~5세 1:20	규모별 종사자수 반영: 교사, 시설장,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 규모의 경제	종일제 연장제	차이없음
아동급식비	연령별 칼로리 차이	규모별 차이 없음	식사간식횟수	차이없음
교재교구비	연령별 커리큘럼 차이	차이 없음	시간반영	차이없음
관리운영비	학급당 인원 수 반영	규모의 경제	시간반영	차이없음
시설설치비	설치면적기준	규모의 경제	차이없음	차이없음

주: 이러한 산출모형은 유치원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산출모형과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1안과 2안으로 제시됨.

자료: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2005, 여성부.

이러한 모형에 따라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은 <표 3-7>과 같다. 이에 따르면 시설의 규모와 정부 지원 정도에 따라 표준 보육비(안)은 달라

지지만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으며 평균 52%를 차지한다. 또한 규모가 클수록 보육비용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표 3-7〉 아동 1인당 표준 보육비의 구성

size	(단위: 원)							
	40인		95인		150인		205인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78,644	246,359	141,734	193,959	136,661	184,208	130,828	176,600
교재교구비	42,036	57,562	39,759	53,750	39,433	52,644	38,798	51,796
급식비	55,827	61,051	54,621	59,856	53,307	58,331	53,031	58,031
관리운영비	37,608	52,624	28,442	39,886	24,261	34,517	23,004	31,988
시설설치비	13,875	23,564	10,590	17,249	9,226	15,343	8,430	14,094
표준보육비	327,990	441,160	275,146	364,700	262,888	345,043	254,090	332,509

자료: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2005 여성부

한편, 연령별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 역시 시설규모와 정부 지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표준보육비용은 낮아진다. 또한 시설규모가 증가할수록 만 3세 아동의 표준 보육비는 감소하지만 만 4세 아동의 감소폭이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

규모	(단위: 원)							
	40		95		150		205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만3세	-	-	310,818	418,444	289,851	386,597	285,303	379,597
만4세	327,003	439,751	274,450	362,849	252,366	327,887	232,576	301,638
만5세	328,977	442,571	276,424	365,669	254,340	330,507	234,550	304,458

자료: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2005 여성부

2009년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는 2005년에 산출된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의 52% 수준이다(표 2-4 참조). 이는 〈표 3-7〉에서

나타나듯이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중 인건비 비중과 동일하다. 그러나 인건비 외의 표준보육비 구성 항목인 교재교구비와 급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은 각 시설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하여 금액이 산정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연령별 가계 보육비 분석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연령별 가계의 보육비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보육교육실태조사, 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등의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보육비의 정의는 자료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한국복지패널의 보육비용은 보육기관 이용료 외에 교재비, 도구 실습비, 재료비, 간식비 등의 부대비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패널의 보육비용은 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 교재비, 간식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의 보육료는 영아와 아동의 보육에 드는 비용으로 각종 부가비용이 포함된다. 노동패널의 보육비용은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등의 부대비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⁴⁾ 여기서는 노동패널을 중심으로 연령별 가계 보육비를 분석하였다. 복지패널의 데이터는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있어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육교육실태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되므로 연차적 보육비의 분석이 불가능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자료를 통하여 연령별 보육비 추이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노동패널상의 보육비는 물가상승률등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연령별 보육비 패턴은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4) 노동패널에서는 탁아모를 이용하는 경우 탁아모 비용을 따로 조사하고 있으나, 이는 보육시설이용에 따른 보육비용에 추가하지 않았다.

않는다. 연령별 보육비는 대부분의 경우 만 1세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 0세 영아의 평균보육비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샘플수가 극히 소수인 경우가 많다. 만2세아의 평균보육비는 만 1세아에 비하여서는 작은편이다. 대체로 만 0세~만2세의 영아 보육비가 만 3세~5세의 유아 보육비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 5세이하 평균 보육비는 2007년의 경우 약 28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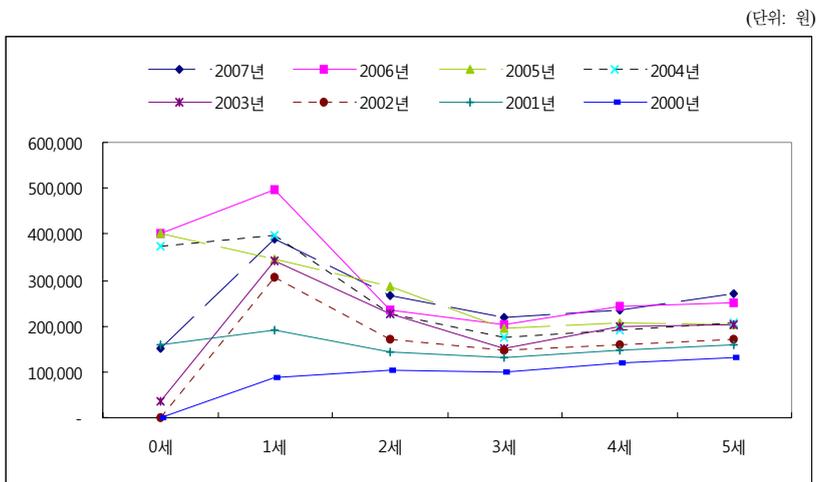
〈표 3-9〉 연령별 보육비 추이(2004년-2007년)

(단위: 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세	375,000	400,000	400,000	150,000
1세	396,667	346,000	495,625	389,259
2세	227,442	286,727	235,490	267,308
3세	174,779	194,546	204,250	218,230
4세	190,483	208,208	244,315	235,952
5세	208,516	201,444	249,684	269,937
0세-5세	233,552	254,496	279,992	281,515

주: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임.

〔그림 3-3〕 연령별 보육비 변화추이



3. 소득계층별 보육비 분석

노동패널 자료상에 나타난 10분위 소득계층별 보육비를 살펴보면 <표 3-10>과 같다. 2004년과 2007년 사이 보육비 분석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물가상승률 등에 기인하여 보육비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소득 계층별 보육비 패턴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보육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3분위에서는 2006년을 제외하고는 보육비가 소득2분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소득 3분위와 소득4분위 가구의 보육비는 소득5분위가구의 보육비보다 낮고, 소득1분위나 소득2분위 보육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당 년도마다 보육료전액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가 다르고 소득계층별 지원율도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보육료 전액 무상지원 대상이 되므로, 보육시설 이용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는 보육료 지원여부에 크게 상관없이 보육수요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터이지만, 소득 3분위와 소득 4분위 가구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 금액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차상위계층에는 보육료가 60%만 지급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차상위계층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 3분위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율이 증가하고, 보육비가 소득2분위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없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득계층별 보육비의 패턴은 보육시설 이용율이 보육료지원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3-10〉 소득계층별 보육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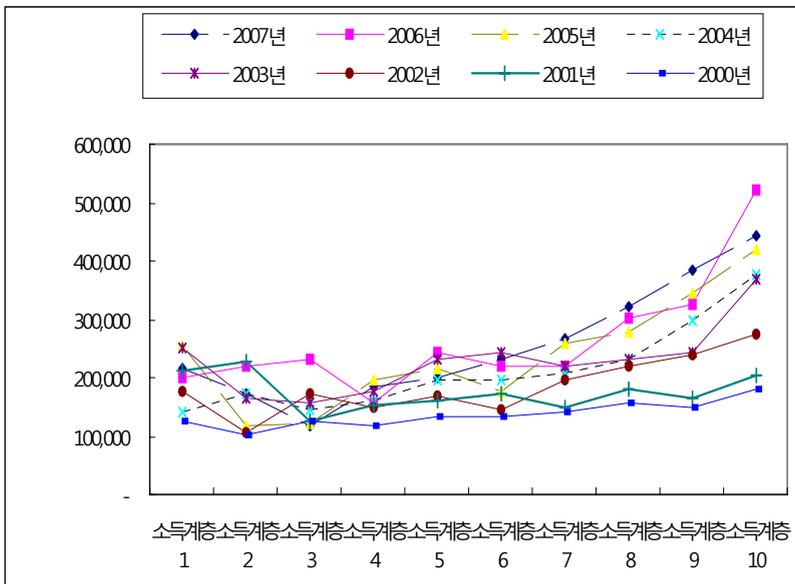
(단위: 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소득계층1	142,000	255,000	200,000	215,000
소득계층2	172,083	116,429	219,375	171,429
소득계층3	144,063	123,226	231,000	117,857
소득계층4	161,017	194,921	155,345	183,281
소득계층5	197,123	216,602	242,469	200,732
소득계층6	195,000	177,164	220,952	232,188
소득계층7	209,114	258,171	218,438	267,432
소득계층8	231,587	277,586	302,418	320,505
소득계층9	297,595	345,385	324,557	383,488
소득계층10	376,753	417,973	520,780	441,216
0세-5세	232,434	255,670	279,920	281,961

주: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임.

[그림 3-4] 소득계층별 보육비 변화 추이

(단위: 원)



4.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별 보육비 분석

마지막으로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육 시설 이용형태별 보육비를 살펴보았다. <표 3-11> 과 <표 3-12> 는 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형태별 보육비를 추정한 것이다. 보육시설 및 서비스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족 및 친지, 혹은 이웃 등 비공식적인 보육 돌보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믿음직스러우며, 가족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등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셋째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의 보육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학연수와 인터넷 유료강좌, 문화센터 등은 기존에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한 후에 혹은 비공식적인 보육서비스 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패널상에 나타나고 있는 보육서비스 이용형태별 보육비의 패턴은 2004년에서 2007년의 시계열로 살펴볼 때,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상이하지는 않다. 대체로 가족 및 친지나 기타 돌보미를 활용하는 경우의 보육비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민간어린이집 활용시 보육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규유치원의 경우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시의 보육비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1〉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별 보육비 1

(단위: 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80,000	270,000	500,000	-
비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455,556	542,821	556,757	535,897
동거하고 있는 타인	-	-	-	1,250,000
비동거하고 있는 타인	480,000	553,333	585,000	490,000
학원	174,800	176,333	176,000	149,286
개인, 그룹과의 학습지	104,348	83,125	121,250	94,444
국공립 어린이집	179,296	202,155	186,087	181,546
민간어린이집	206,081	197,225	201,105	231,092
사설놀이방	190,000	260,588	195,417	253,600
직장보육시설	184,000	-	128,000	-
정규유치원(4시간)	192,525	225,111	245,349	223,875
시간연장제 유치원(6시간)	182,432	186,279	263,571	266,316
종일제 유치원(8시간)	260,435	183,448	289,762	330,606
어학연수	153,333	-	40,000	-
인터넷 유료강좌	-	56,667	-	-
문화센터	-	88,421	72,258	66,905
기타	103,636	238,571	196,667	173,333
전체 월 평균 보육비	236,138	256,465	281,555	305,450

〈표 3-12〉 이용형태별 보육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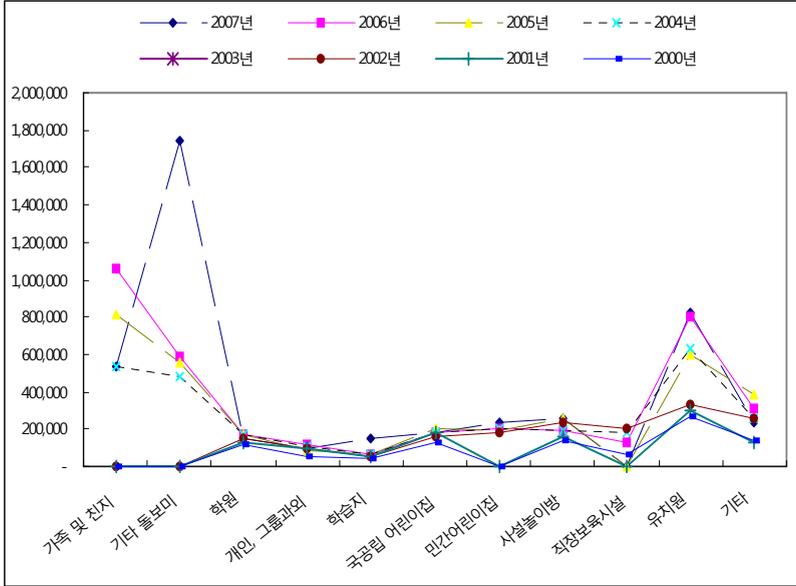
(단위: 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가족 및 친지	535,556	812,821	1,056,757	535,897
기타 돌보미	480,000	553,333	585,000	1,740,000
학원	174,800	176,333	176,000	149,286
개인, 그룹과의 학습지	104,348	83,125	121,250	94,444
국공립 어린이집	179,296	202,155	186,087	181,546
민간 어린이집	206,081	197,225	201,105	231,092
사설 놀이방	190,000	260,588	195,417	253,600
직장 보육시설	184,000	-	128,000	-
유치원	635,392	594,838	798,682	820,797
기타	256,969	383,659	308,925	240,238
전체 월 평균 보육비	236,138	256,465	281,555	305,450

주: 가족 및 친지(동거 및 비동거 가족과 친지), 기타 돌보미(동거 및 비동거 타인), 유치원(정규유치원, 시간 연장제 유치원, 종일제 유치원), 기타(어학연수, 인터넷 유료강좌, 문화센터, 그 외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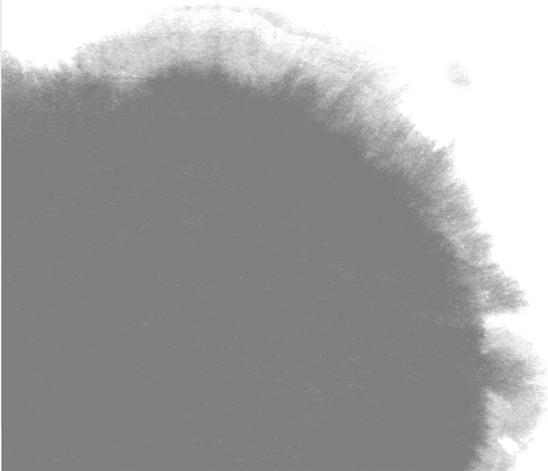
[그림 3-5] 이용 형태별 보육비 변화추이

(단위: 원)



04

보육료 지원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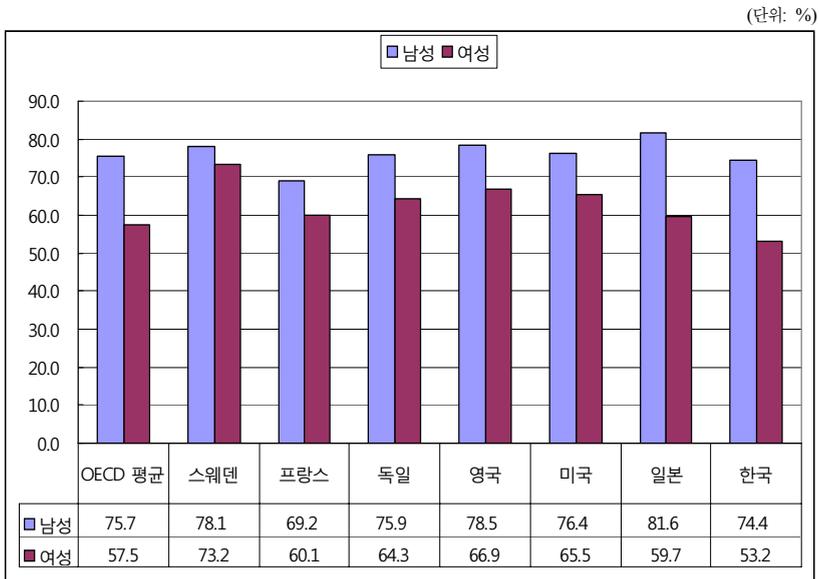
제4장 보육료 지원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국의 여성 고용율은 2008년 기준 53.2%로 OECD평균인 57.5%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남성의 고용율이 74.4% (2008년 기준)로 OECD 평균인 75.7%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에 비하여, 여성의 고용율은 외국의 경우보다 상당히(약 4.3%)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연령별 고용율은 결혼 및 출산연령기에는 감소하는 M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럽,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율 패턴이 남성의 패턴과 같은 역U자 형태인 것과 다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에 비하여서는 고용율 감소가 일어나는 결혼 및 출산연령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M자 형태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의 경우 여성 고용율이 꺾이는 연령은 25세 부터였으나, 2005년부터는 30세로 이동하였고, 감소폭도 줄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여욕구의 증가 등으로 결혼연령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고용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남성의 고용율 패턴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M자형의 여성 고용율은 출산 및 자녀양육 부담으로 경력 단절현상과 이후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령별 여성 고용율 패턴은 여성 고용율의 제고에 있어서,

출산 및 자녀양육기의 여성과 이후 재취업기의 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현행의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여성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정책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서는, 보육정책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보육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노동시간 등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4-1] 여성 고용율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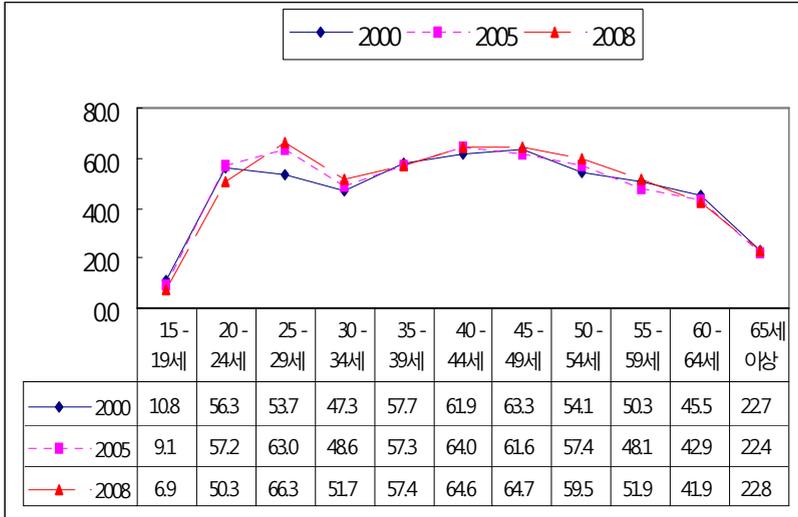


주: 15-64세 인구 대상 통계임(스웨덴, 영국, 미국은 16-64세 기준).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9에서 작성

[그림 4-2] 우리나라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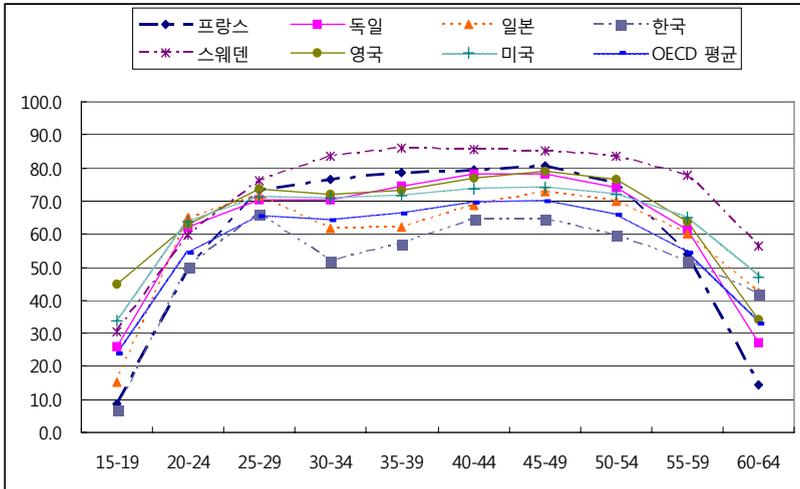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http://www.kosis.kr>)

[그림 4-3] 연령별 여성 고용률의 국제비교

(단위: %)



주: 15-64세 인구 대상 통계임(스웨덴, 영국, 미국은 16-64세 기준).

자료: OECD, 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

제1 절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 모형

노동공급 효과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OLS 추정 방식에서 비근로자의 노동공급 추정시에 일어나는 표본 편의 (sample selection bias)를 고려한 two-stage 추정 방식, 그리고 Heckit으로 흔히 불리는 three-stage 추정방식 등, 방법론적인 연구와 이를 활용한 노동공급탄력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Killingsworth(1983)는 노동공급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크게 첫 세대 (first generation)와 둘째 세대(second generation)연구로 나누고 있다. 첫 세대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OLS 추정 방식에 의한 연구이며, 둘째세대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자료 상 0이나 missing value를 가지는 비근로자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추정상의 문제점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이에 Heckman의 표본 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 교정을 위한 추정 방법, Tobin의 Tobit등을 활용한 추정 방법을 활용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는 등 실증모형의 틀을 제공한 연구들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Heckman(1990)의 three-stage Heckit 모형이 흔히 쓰이는 추정 방식이다. 여기서는 Heckit 모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육료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W_i &= \beta_0 + \beta_1 X_i + \beta_2 CH_i + \varepsilon_i \\
 W_i &= 1 \text{ if } \nu Z_i + u_i > 0 \\
 &= 0 \text{ if } \nu Z_i + u_i \leq 0 \dots\dots\dots(1) \\
 H_i &= \alpha_0 + \alpha_1 V_i + \alpha_2 W_i^* + \varepsilon_i \dots\dots\dots(2)
 \end{aligned}$$

여기서 X_i 는 여성노동공급에 관한 대다수의 실증연구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변수로, 연령, 연령의 제곱, 교육 연수, 교육연수의 제곱, 교육 연수 \times 연령, 대도시 거주 여부이며, CH_i 는 보육료지원액이다. Z_i 는 노동참여결정식으로 연령, 연령 제곱, 교육 연수, 교육연수의 제곱, 만 2세 이하 자녀 수, 만 3세-만5세 자녀수, 초중고교 자녀수, 가구원 수, 주관적 건강 상태, 대도시 거주 여부, 남편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원소득, 보육료지원액이다. V_i 는 연령, 연령 제곱, 교육 연수, 만 2세 이하 자녀 수, 만 3세-만5세 자녀수, 초중고교 자녀수, 가구원 수, 주관적 건강 상태, 대도시 거주 여부, 비근로소득이며, W_i^* 는 두 번째 단계의 임금추정식에 의해 추정된 임금이다.

제2절 자료의 분석과 설명

보육료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노동패널 10차년도의 개인 파일과 가구 파일을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65세 이하의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대상은 원칙적으로 가구이지만, 한가구에 기혼여성이 둘 이상인 경우 이들을 각각의 가구에 대한 기혼여성으로 취급하였다. 한세대 이상을 포함한 가구의 경우 대부분은 부모를 가구주로 한 기혼여성이며, 이때 부모는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제외되거나, 55세이상 고령층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고교생이하 자녀를 가진 자녀세대의 기혼여성을 기혼여성으로 포함하였다. 65세 이하 전체 기혼 여성은 총 3,324명이며, 이중 취업한 기혼 여성은 1,567명(47.1%)이다.⁵⁾ 전체 기혼 여성 중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은

5) 교육등 주요 설명변수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는 샘플구성에서 제외시켰다.

707명이며, 이중 취업자는 237명 (33.5%), 비취업자는 470명으로 나타났다.

65세 이하 전체기혼여성은 평균 43.9세이며, 취업한 기혼여성은 평균 44세, 비취업자는 평균 43.8세로 나타나,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취업자인 기혼여성은 비취업자에 비해 평균 교육연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산 및 양육시기 이후 여성 재취업이 주로 저학력 여성취업자를 중심으로 더 용이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만 2세이하 영아 자녀수는 취업자의 경우 0.08명으로 비취업자의 0.17명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영아보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만 3세-만 5세 자녀수도 취업자는 평균 0.12명으로 비취업자의 0.19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활동참여 단절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초등학생 이상 고등학생 이하 자녀수는 취업자가 0.75명으로 비취업자의 0.58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임금을 포함한 기타 가족 구성원의 임금인 가구원소득은 취업자의 경우 평균 225만원으로 비취업 기혼여성의 평균 268만원보다 작게 나타나, 배우자 소득에 따라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 높은 여성의 취업률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비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더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기초 통계

	전체 기혼여성		취업 기혼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43.918	(10.324)	44.074	(9.263)
연령 ²	2035.381	(933.761)	2028.271	(833.987)
교육연수	11.575	(3.355)	11.507	(3.432)
교육연수 ²	145.225	(72.607)	144.176	(75.434)
교육연수 * 연령	487.759	(138.354)	487.814	(134.819)
0~2세 자녀수	0.1255	(0.347)	0.077	(0.273)
3~5세 자녀수	0.156	(0.388)	0.115	(0.348)
초·중·고교 자녀수	0.662	(0.887)	0.754	(0.922)
대도시거주*	0.513	(0.500)	0.513	(0.500)
월평균 가구원소득**	247.735	(261.134)	224.608	(182.567)
주관적 건강상태***	1.570	(0.700)	1.535	(0.658)
보육료지원액	28.418	(77.341)	12.961	(52.405)
취업여성	0.444	(0.497)	1	(0)
월평균 임금	43.918	(10.324)	118.677	(123.902)
주당 근로시간	49.511	(17.577)	49.511	(17.577)
표본 수	3,324		1,567	

주: * 대도시거주는 특별시와 광역시 거주임.

** 가구원소득은 남편의 임금과 기타 가구원의 임금을 합한 월평균 비근로소득임.

*** 주관적 건강상태는 1= 건강함, 2= 보통, 3=건강하지 않음을 나타냄.

제3절 보육료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에 미치는 효과

보육료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였다. 보육료 지원액은 각 가구의 소득과 만 5세 이하 해당 자녀수등에 따라 2007년 보육료 지원대상을 가려내고, 지원 금액을 적용하였다. 이때 보육료 지원액은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등 가구당 해당 보육료 지원액을 모두 적용한

금액이다. 기혼여성 노동참여결정식 추정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현행 보육료 지원은 기혼여성의 노동참여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까지의 보육료 지원이 소득구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의 취업으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는 보육료 지원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는 보육료 지원체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육료 지원이 소득금액에 따라 점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 지원금액이 비연속적으로 결정되므로, 소득증가에 따른 보육료 지원금액이 큰폭으로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2007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만5세아 보육료 전액 무료 대상이 도시지역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까지 였던 것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까지로 확대되고, 차등보육료 부분적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인 가구까지 확대되는등 보육료 지원대상이 증가하였다. 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인 3층에는 50%의 보육료가 지원되던 것이 80%로 증가하였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인 4층에는 40%의 보육료가 지원되던 것이 50%지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구 소득의 증가에 따라 특정 지점에서 지원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보육료 지원구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취업에 대한 유인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기혼여성의 노동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만0~2세 자녀수, 초중고교 자녀수, 연령, 교육, 남편의 임금을 비롯한 가구원 임금, 주관적 건강상태, 대도시거주여부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만2세 이하 자녀수는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중고교 자녀수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수는 많을수록 노동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령과 노동참여율의 관계에서는, 일정수준까지의 연령대까지는 노동참

여율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과 노동참여율도 저학력 고용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선형관계라기 보다는 비선형관계로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비선형관계로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연수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어느 수준이상의 학력에서는 오히려 교육연수가 늘어날수록 노동참여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편의 임금을 비롯한 기타 가구원의 임금등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의 성격이 강한 비근로소득은 여성의 노동참여 의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노동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노동참여결정식

	계수(Coef.)	표준오차(Std. Err.)
연령	0.163***	(0.024)
연령 ²	-0.002***	(0.000)
교육 연수	-0.133***	(0.030)
교육 연수 ²	0.006***	(0.001)
0~2세 자녀수	-0.169*	(0.095)
3~5세 자녀수	-0.079	(0.081)
초·중·고교 자녀수	-0.065*	(0.034)
대도시거주	-0.027	(0.045)
가구원수	0.120***	(0.028)
가구원소득	-0.001***	(0.000)
주관적 건강상태	-0.103***	(0.034)
보육료 지원액	-0.004***	(0.000)
상수	-2.400***	(0.518)
Log likelihood	-2134.221	
Chi-square	328.74	
LR test (p=0)	0.000***	

주: * <.1, ** <.05, *** <.01

제4절 보육료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보육료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단계 (three stage) Heckit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첫단계 (first stage)는 노동참여식 추정으로 이는 앞절의 추정결과와 같다. 두 번째 단계(second stage)는 임금 추정식으로 노동참여식에서 구한 밀지수 (mill's ratio)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임금 결정식을 추정한다. 셋째 단계 (third stage)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추정된 임금추정액을 도구 변수로 하여 노동시간결정식을 추정한다.

임금 추정식의 설명변수로는 연령, 연령의 제곱, 교육연수와 교육연수의 제곱, 대도시지역 거주여부 및 밀지수(mills ratio)를 사용하였고, 연령과 교육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여 연령과 교육을 곱한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였다. 연령과 임금의 관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은 감소하다가 이후 어느 정도 이상의 연령부터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육연수의 경우도 교육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다가 이후 어느 수준 이상의 교육연수부터는 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3〉 임금 추정식

	계수(Coef.)	표준오차(Std. Err.)
연령	-13.224***	(5.075)
연령 ²	0.096**	(0.046)
교육 연수	-34.337***	(11.196)
교육 연수 ²	1.353***	(0.242)
교육연수 * 연령	0.410***	(0.146)
대도시거주	11.300**	(5.722)
Mills ratio	-61.618***	(16.308)
상수	548.789***	(162.863)

주: * <.1, ** <.05, *** <.01

노동공급시간 결정식의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4-4>와 같다. 보육료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는 음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보육료 지원은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보육료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 참여에 미치는 효과와 같은 것으로, 보육료 지원이 소득구간별로 비연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임금은 노동시간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노동공급이론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추정결과에 따른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임금탄력성은 0.416으로 추정되어, 상당히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임금과 기타 가구원의 임금을 포함한 가구원소득은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편의 임금이 기혼여성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을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

가구원수가 많은 기혼여성일수록 노동공급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이상 고등학생 이하 자녀수가 많을 수록 노동공급시간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2세 이하 자녀수와 만 3세~만5세 이하 자녀수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령은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이 늘어나다가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공급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육의 경우 고학력 기혼여성일수록 노동공급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노동공급시간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4〉 노동공급시간 추정식

	계수(Coef.)	표준오차(Std. Err.)
연령	7.014***	(0.992)
연령 ²	-0.836***	(0.011)
교육 연수	-2.000***	(0.732)
0~2세 자녀수	-6.023	(4.032)
3~5세 자녀수	-3.786	(3.396)
초·중·고교 자녀수	-3.313**	(1.04)
가구원수	4.920***	(1.169)
가구원소득	-0.039***	(0.005)
대도시	-1.707	(1.922)
주관적 건강상태	-3.724***	(1.433)
보육료 지원액	-0.150***	(0.022)
임금추정	0.083*	(0.046)
상수	-116.757***	(21.843)
sigma	47.651	(0.976)
Log likelihood	-9440.386	
Chi-square	349.20	
LR test (p=0)	0.0000	

주: * < .1, ** < .05, *** < .01

제5절 소결과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보육료지원정책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노동참여와 노동공급시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서는 2007년도 자료인 노동패널 10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7년 보육료지원정책은 보육료전액 무상지원 대상자는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보육료 부분 지원 대상자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까지 확대된 해이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지역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된 해이다. 하지만 보육료 무상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까지이고 이후에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감소하는 것

이 아니라, 소득구간이 변동됨에 따라 보육료지원 금액이 급격히 변하게 됨으로 인한 근로유인의 감소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프로빗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료지원은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의 노동공급시간에 대한 효과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교정하기 위하여 세 단계(three stage) 추정으로 이루어지는 Heckit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노동공급시간 역시 보육료지원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의 보육료지원 구조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과 노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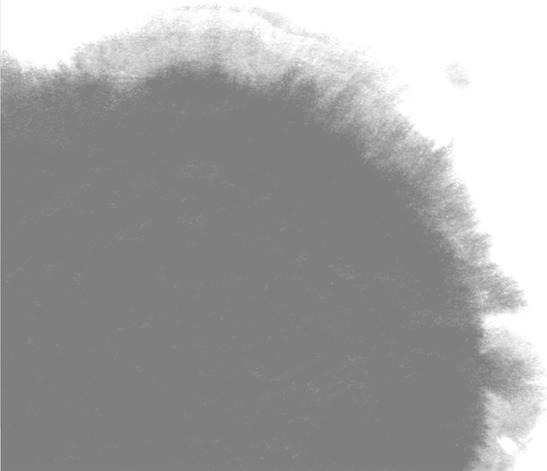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공급은 기혼여성 취업자의 경우 저숙련, 저학력, 저임금 직종의 노동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별 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 낮은 저소득층 기혼여성이 생계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취업하는 경우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보육료지원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은 다분히 존재한다. 현실적으로도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가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여 오고 있다. 보육료 지원은 최근에 들어 해마다 1~2조원씩 예산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 대상과 지원액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어서, 어느 수준까지 보육지원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육지원의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보육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육지원을 통한 자녀양육의 부담완화와 여성노동공급의 활성화는 보

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정책은 맞벌이 부부에게 노동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육료지원 대상의 소득구간별 비연속성으로 인해 노동유인이 감소되는 지원형태의 재설계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출산과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질의 보육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공립시설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육료 자율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간 보육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05

보육정책의 출산율 효과제고 분석



제5장 보육정책의 출산율제고 효과분석

최근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저출산 현상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가용노동력의 감소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우석진, 2007; 2008; 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한국 여성의 출산이 저조한 많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의 위험을 들 수 있다. 가임기의 여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에 노동공급을 했던 직장에서의 경력이 출산 후에 단절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연구(김지경·조유현, 2002; 김지경, 2003; 2004; 최효미, 2006)에 따르면, 실제로도 가임기의 한국 여성 노동자들은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력단절에 대한 위험 때문에 가임기의 여성노동자들, 특히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혹은 출산시기를 늦추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출산으로 기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위험이 가임기 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이용하여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위험의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한국노동패널(1998-2005)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민간부문 여성노동자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는 동료와의 경쟁(peer pressure) 혹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에 당면하게 되는 불이익 등 경력단절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빈도가 공공부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도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를 식별전략으로 이용하였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녀수와 상대적으로 경력단절의 위험이 높은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녀수를 비교해봄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연령인 20대에 공공부문에 근무한 여성은 민간부문에 비해 오히려 좀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연령인 30대에 공공부문에 근무한 여성은 민간부문에 근무한 여성보다 0.6명 정도의 추가적인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경력단절위험이 출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경제학적으로 매우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기존의 문헌들은 주로 출산이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해왔다. 예를 들면, 김지경&조유현(2002)과 김지경(2003)은 한국노동패널(KLIPS)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첫 아이 출산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 이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기혼여성들이 출산 이후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연쇄적인 여성 경력단절의 고리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좀 더 빨리 복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이행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출산 전 취업 형태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노동시장 복귀로의 이행률이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였다.

김우영(2003)의 연구는 출산 이외에도 결혼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에 그 공헌이 있다. 김우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률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세대별, 학력별, 노동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 당시의 노동시장 경험이 현재의 노동시장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전후에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결혼과 출산 직후 상당수가 직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과 출산 전후에 취업을 경험한 우리나라 여성은 미국의 여성보다 생애취업 기간이 길며, 현재 직장의 임금프리미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와 출산 후에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미국의 여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으며 여성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해 남녀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지경(2004)은 출산 후 기혼여성의 취업상태 변화에 있어서 자녀출산으로 인하여 유보임금이 높아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의 특성과 이들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 전 미취업 상태였던 여성의 3.1%가 출산 후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경우 출산 후 미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젊고 자녀보육대행자를 가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결정요인에 반영이 되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양육대행자 및 보육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분석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직업전환경험의 특성이 이들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최효미(2006)의 연구는 출산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데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 전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학력이 전문대 이상이며,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더 나아가서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에 복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학력으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고임션하였다.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상층에 속하는 여성은 출산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주로 출산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반대방향의 인과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즉, 노동시장의 상황인 경력단절의 불확실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문헌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 절 모형

본 장에서는 간단한 2기간 모형을 통해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자. 대표여성은 2기간 동안 출산 및 소비 결정을 내리게 된다. 1기에는 출산과 소비결정(c_1, n_1)을 내리고, 2기에는 주어진 자녀수 하에서 소비결정(c_2)만 내리게 된다. 노동공급은 매기 1단위씩의 노동공급을 한다고 하자. 공공부문(PU)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의 위험이 전혀 없는 반면, 민간부문은 일정확률로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즉, 경력단절확률(π)이 공공부문에서는 0이지만 민간부문에서는 0이 아니라는 가정이다. 한편, 매기 노동공급을 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경력단절의 효과는 임금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위해 1기에서의 임금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동일하게 w_1 이지만, 2기에서 경력이 계속 이어졌을 경우에는 w_2^H 이고 경력이 단절되었을 경우에는 w_2^L 이라고 가정하자. 임금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1) \quad w_2^L < w_1 < w_2^H$$

즉, 경력을 계속 이어나갔을 경우에는 임금이 1기에 비해 상승하게 되지만,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을 경우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1기에서 받는 임금보다 낮게 된다는 가정이다.

대표여성의 효용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자.

$$(2) \quad u(c_1, n_1) + \beta E(u(c_2, n_2) | n_1)$$

위 식에서 2기의 기대효용함수를 계산할 때는 1기 출산으로 인해 2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에 대한 위험에 대해 적분해야 한다.

한편, 1기 효용함수의 1계 도함수는 양수, 2계 도함수는 음수, 교차도함수는 양수라고 가정하자($u_c > 0, u_{cc} < 0, u_n > 0, u_{nn} < 0, u_{cn} > 0$).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자본축적은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매기의 예산제약은 아래 식과 같다.

$$(3) \quad \begin{aligned} c_1 + rn_1 &= w_1 \\ c_2 + rn_2 &= w_2^k, \quad k = H, L \\ r: &\text{ 자녀양육비용} \end{aligned}$$

문제(1)-(3)을 2기에서부터 풀어보자. 2기에서는 1기에서의 출산결정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는지에 관한 여부가 결정된다. 그 결과, 2기에서 어떤 임금을 받고 있을 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경력이 단절되어 노동시장에 재진입 해야 하는 경우 앞의 가정에 따르면 w_2^L 를 받게 된다. 2기의 최적화 문제는 아래와 같다.

$$(4) \quad \begin{aligned} \max \quad & u(c_2, n_2) \\ \text{s.t.} \quad & c_2 + rn_2 = w_2^k, \quad k = H, L \end{aligned}$$

최적소비결정을 2기에 내리면, 2기의 가치함수(value function)는 식 (5)과 같이 주어진다.

$$(5) \quad V_2(n_1, k) = u(w_2^k - rn_1, n_1), \quad k = H, L$$

2기에서 최적소비가 선택되었을 경우, 1기의 최적출산결정(optimal fertility decision)은 아래의 문제를 풀면 된다.

$$(6) \quad \max u(c_1, n_1) + \beta \{ (1 - \pi(n_1)) V(n_1, H) + \pi(n_1) V(n_1, L) \}$$

$$s.t. \quad c_1 + rn_1 = w_1$$

여기에서 경력단절확률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1기의 자녀수의 함수라고 가정하였다. 자녀수가 증가하면 자녀를 돌보는데 투입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즉, $\pi' \geq 0$ 로 가정하였다.

먼저, $\pi = 0$ 인 경우, 즉 공공부분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문제(6)의 1계 필요조건을 정리하면 식(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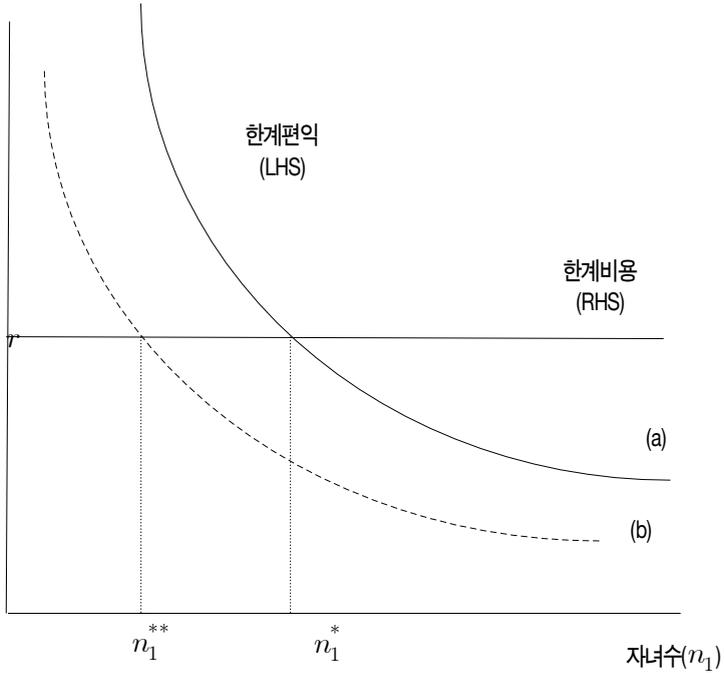
$$(7) \quad \frac{u_n^1 + \beta u_n^{2,H}}{u_c^1 + \beta u_c^{2,H}} = r$$

u_c^t : t기의 소비에 대한 편도함수, u_n^t : t기의 자녀에 대한 편도함수

식(7)의 좌변은 추가적인 자녀로부터의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을 소비단위로 나타낸 것이고, 우변은 한계비용(marginal cost)에 해당한다. 소비와 자녀로부터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게 되면, 우변은 자녀수에 대해서 단조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최적출산결정(n_1^*)은 [그림 5-1]과 같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위의 모형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비용이 증가할 때 자녀수가 감소하게 되고, 자녀로부터의 한계효용이 증가하거나 소비로부

터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게 되면 출산자녀수가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1] 최적출산결정



경력단절확률 π 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식(7)이 약간 변형되게 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n_1 > 0$ 인 경우 $\pi(n_1) = \bar{\pi} > 0$ 라고 가정하자. 즉, 경력단절확률은 자녀수에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문제 (6)의 1계 필요조건은 식(8)과 같이 주어진다.

$$(8) \quad \frac{u_n^1 + \beta\{(1 - \bar{\pi})u_n^{2,H} + \bar{\pi}u_n^{2,L}\}}{u_c^1 + \beta\{(1 - \bar{\pi})u_c^{2,H} + \bar{\pi}u_c^{2,L}\}} = r$$

식(8)의 좌변은 식(7)의 좌변보다 모든 n 에서 작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그림 5-1]의 (b)처럼 한계편익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확률이 0이 아닌 경우의 최적자녀수는 n_1^{**} 으로 경력단절확률이 0인 경우와 비교하면 자녀수가 감소하게 된다. 경제활동참가를 하고 있는 가임기 기혼여성 중에서, 다른 조건은 유사하지만 경력단절의 위험이 커질수록 좀 더 작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된다. 즉, 최적자녀수와 경력단절확률은 다음과 같은 관계로 표현된다.

$$(9) \quad n^* = f(\bar{\pi}; Z), \quad f'(\bar{\pi}) > 0$$

본 연구에서는 식(9)과 같이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결정과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결정을 살펴보았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관련 제도를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복귀 후에도 기존의 가지고 있던 자신의 경력을 그대로 이어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경쟁으로 인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했을 때 출산 전 경력을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직종, 다른 업종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력단절 위험의 차이가 출산결정을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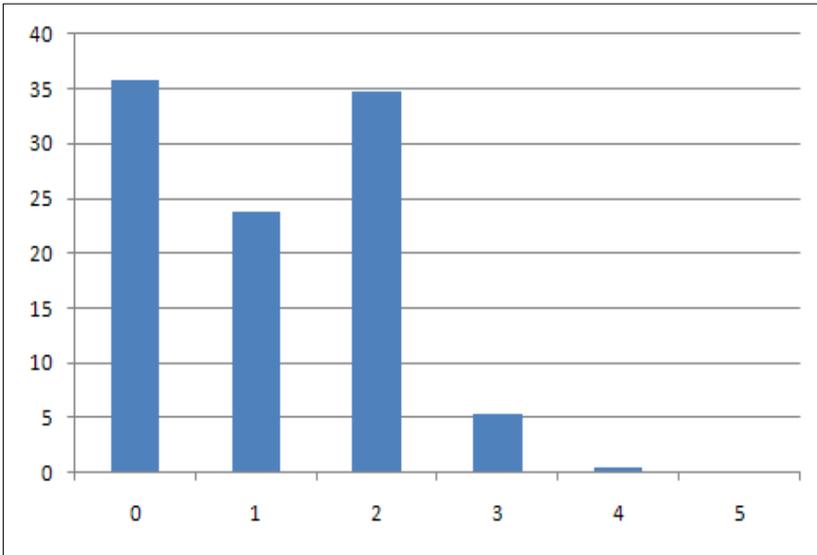
제2절 자료 및 추정결과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위험과 출산결정과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KLIPS(이하 노동패널)의 10차년도(2007년) 가임기 여성의 출산력 자료와 1-10차년도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 민간부문에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식별해 내었다. 특별히 20대에 근무하였던 산업과 30대에 근무하였던 산업을 구분하였다. 더 나아가서 어떤 직종에 근무하였는지도 파악하였다. 여기에 출산력 자료를 사용하여, 두 부문 간에 출산율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10차 노동패널의 자녀수의 분포는 가구파일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노동패널의 경우 개인자료에는 1차에서 인터뷰한 경우를 제외하면, 각 웨이브에 신규로 진입한 경우에만 자녀수가 기록되어 있다. 웨이브 10의 자녀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구자료의 가구구성원과 가구주와의 관계변수와 연령변수 등을 이용하였다. [그림5-2]와 <표 5-1>은 10차 웨이브의 자녀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약 5,260개의 가구 중에서 약 64%의 가구가 자녀가 있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자녀가 약 35%로 다른 자녀수보다 빈도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경우가 자녀수 1명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5-2] 웨이브 10 자녀수 분포(가구자료)



자료: 10차 노동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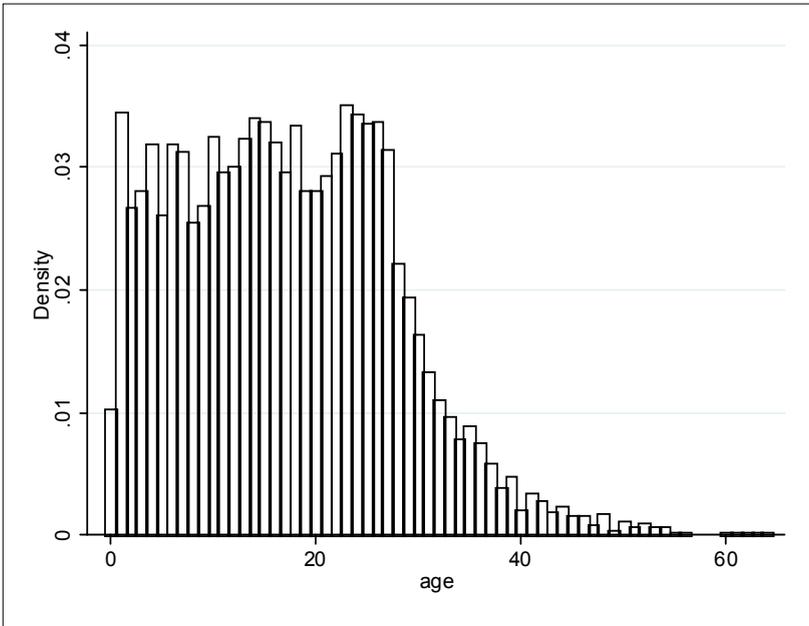
<표 5-1> 웨이브 10 자녀수 분포(가구자료)

자녀수	빈도	비중	누적
0	1,880	35.75	35.75
1	1,248	23.73	59.48
2	1,827	34.74	94.22
3	279	5.31	99.52
4	22	0.42	99.94
5	3	0.06	100
총계	5,259	100	

자료: 10차 노동패널, 가구자료

관측된 자녀의 연령분포를 살펴보자. 자녀연령의 평균 17.16세이고 가장 어린 영아부터 64세의 노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연령의 분포는 [그림 5-3]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5-3] 자녀의 연령분포



자료: 10차 노동패널, 가구자료

이번에는 기혼여성의 연령분포를 살펴보자. 기혼여성의 연령이 중요한 것은 자녀수의 분포가 출산이 완결된 후의 분포인지 아니면 아직 미완결의 분포인지를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인구학에서는 가임기를 최소 16세에서 최대 49세까지 보는 것이 보통이다.⁶⁾ 먼저, 기혼여성은 여자 이면서 가구주 혹은 배우자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전체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48.7세로 10차 웨이브의 기혼여성들은 거의 가임기의 끝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평균연령도 이보다는 어리지만 45.3세로 실질적인 가임기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혼여성의 평균연령을 볼 때, 앞에서 확인한 자녀의 분포는 적어도 평균적인 의미에서는 출산이 거의 완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6) 한계출산을 계산 시에 사용되는 최소, 최대 연령이다.

〈표 5-2〉 기혼여성 연령의 분포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모든 기혼여성	4461	48.75	14.26	17	91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3191	45.32	11.31	19	91

자료: 10차 노동패널, 가구자료

이번에는 <표 5-3>을 통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여부(7) 살펴보자. 모든 기혼여성을 살펴보았을 경우 약 44.8%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었다. 출산경험이 있거나 자녀양육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47.4%로 전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약 2.6%p 정도 높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혼여성의 연령의 효과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대체적으로 M-자형 패턴을 가지고 있고, 40대 후반은 M-자 중에서 마지막에 하락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연령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5-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	빈도	비중	누적
모든 기혼여성	미참가	2,461	55.17	55.17
	경제활동참가	2,000	44.83	100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미참가	1,680	52.65	52.65
	경제활동참가	1,511	47.35	100

자료: 10차 노동패널

취업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형태에 따라서 자녀수와 연령에 있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자. 전체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약 48.7세

7) 취업자인지 미취업자인지를 묻고 있는 0201번 변수를 사용하여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고 자녀수는 1.24명이다.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의 경우 이보다 연령이 6세 정도 어린 42.8세이고 자녀수는 평균보다 0.12명 많은 1.36명이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연령은 평균보다 많지만 자녀수의 경우 임금근로자 보다는 약간 작은 1.32명이다. 가족 혹은 친척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주고 있는 경우에는 연령도 51세로 더 많고 자녀수도 1.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의 패턴을 정리해보면 현재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한 경우가 자녀수가 좀 더 많았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의 자녀수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가족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으로 인해 약간 더 자녀수가 많았다.

<표 5-4> 기혼여성의 취업형태와 자녀수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모두	연령	4461	48.751	14.256	17	91
	자녀수	4461	1.243	0.955	0	5
임금	연령	1235	42.878	10.692	19	76
	자녀수	1235	1.367	0.914	0	4
자영업	연령	432	50.01	11.471	26	79
	자녀수	432	1.324	0.987	0	5
무급가족종사자 (무보수)	연령	340	51.68	10.333	27	79
	자녀수	340	1.385	1.019	0	4

자료: 10차 노동패널

이번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의 산업별 자녀수를 살펴보자. 산업분류는 2002년 통계청에 정의한 대분류를 따랐다. 분류는 <표 5-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5〉 산업대분류(2002년, 통계청)

기호	산업	기호	산업
011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650	금융 및 임대업
100	광업	700	부동산, 임대업
150	제조업	720	사업서비스업
40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76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0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800	교육서비스업
550	숙박 및 음식점업	85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00	운수업	870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640	통신업	900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출처: 노동패널 10차 코드집에서 재인용

[그림 5-4]는 2007년 현재 기혼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자녀수를 나타낸다(좀 더 자세한 분포는 <부표 1> 참조). 자녀수가 제일 작은 산업은 0.79명으로 농업이었고, 가장 많은 산업은 2명인 광업이었다. 농업의 경우 기혼여성의 연령은 60.4세로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동패널의 자녀는 동거하고 있는 자녀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출가로 인해 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대치를 기록한 광업의 경우, 관측치가 2개 밖에 되지 않아 결과에 통계적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산업분류에 따라 공공부문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 부문을 포함시켰다. 공공부문의 출산율이 좀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공공부분의 자녀수가 1.18명으로 다른 산업부분에 종사하는 자녀수 보다 현격히 적은 것을 [그림 5-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림 5-4]로부터는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을 낮춘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 경력단절의 위험과 출산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관측되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다음의 3가지 정도의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그림 5-4]는 다른 변수, 예를 들어 학력, 소득, 연령, 업종 등이 통제되지 않은 자녀수에 대한 비조건부 평균이기 때문일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 하에서, 즉 좀 더 균질한 여성들과 그들이 종사하는 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변수가 기혼여성의 연령인데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평균적으로 어리다면 자녀수가 적은 것은 산업별 특성 때문이 아니라 아직 출산이 완결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평균연령이 42세와 38세로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평균연령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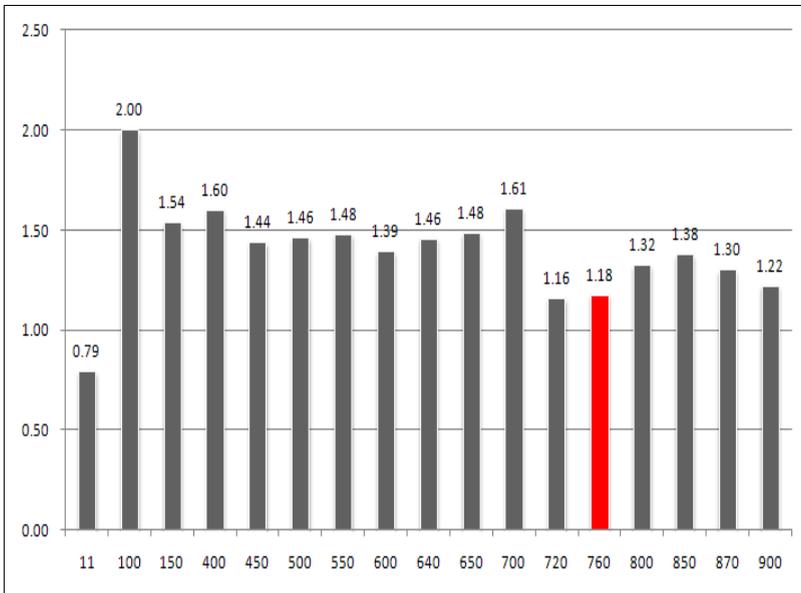
둘째, 더 중요한 요인은 현재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직업이 해당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때 가지고 있던 직업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자녀를 출산하는 동안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다가 출산이 완료된 후 입직이 좀 더 수월한 직업으로 이직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공부문은 출산을 완료한 30대 후반, 40대의 여성이 입직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결과적으로 출산을 마친 여성의 입직이 상대적으로 쉬운 산업에서 좀 더 많은 자녀수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 주된 출산연령기인 20대 혹은 30대에 종사했던 산업을 통제한다면 [그림 5-4]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셋째,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가령, ‘전문가’와 ‘서비스 종사자’가 당면하고 있는 경력단절에 대한 위

힘은 다를 수 있다. 전문 직종의 경우 출산으로 인해 원래의 경력에서 떠나게 되면 경쟁과 인적자본의 감가로 인해 원래의 경력으로 다시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는 한결 쉬울 수 있다. 자녀수가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력단절의 위험이 업종별보다 아니라 직종별로 차이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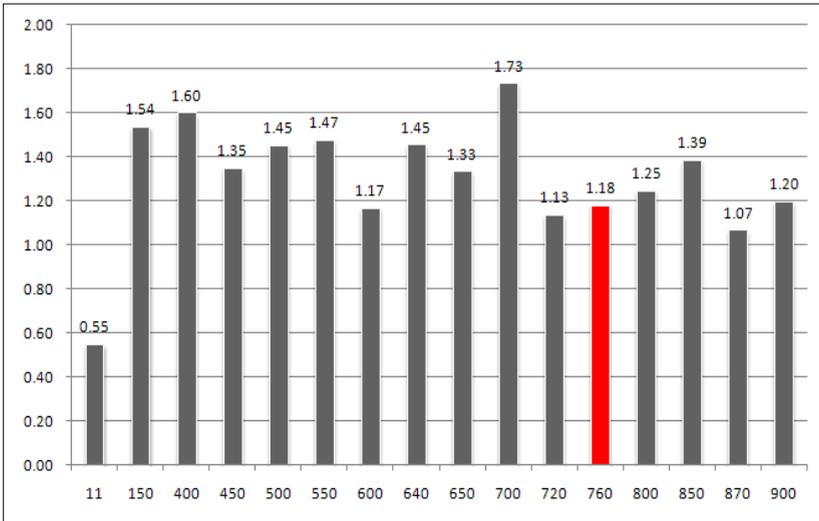
한편 위와 산업별 자녀수의 패턴이 종사상 지위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같은 산업에 있더라도 임금근로자 인지, 자영업자 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5-5]와 <부표 2>는 대상 여성을 임금근로자에 한정 지었을 때의 산업별 자녀수를 보여주고 있다. 임금근로자에 한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녀수는 다소 감소하게 되나 산업별 자녀수의 패턴을 대체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자녀수 분포



자료: 10차 노동패널(2007)

[그림 5-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자녀수 분포(임금노동자)



자료: 10차 노동패널(2007)

위에서 지적한대로 자녀수와 관련 있는 변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 주요 출산연령기, 즉 20대와 30대에 근무했던 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기혼여성의 과거 노동시장 참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10차 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였다. 직업력 자료에는 웨이브 1부터 웨이브 10 사이에 응답자가 가지고 있던 직업의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20대 혹은 30대의 일자리를 식별해내기 위해서, 직업력 자료로부터 20대에 근무했던 직장과 30대에 근무했던 일자리를 골라내었다. 약, 9천 6백개의 일자리가 관측되었고 평균 지속기간은 <표 5-6>이 보여주듯이 5.8년이였다. 20대에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지속기간은 약 6년이고 30대에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지속기간은 이보다 3년 정도 긴 9.14년이였다.

〈표 5-6〉 20대 혹은 30대 시작한 일자리의 지속기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9578	5.81	8.27	1	69
20대의 일자리	6727	6.05	9.06	1	69
30대의 일자리	4264	9.14	11.29	1	69

자료: 10차 노동패널, 직업력

기혼여성이 20대 혹은 30대에 시작한 일자리수를 살펴보자. <표 5-7>에 따르면 대다수의 여성인 42%가 1개의 일자리만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나머지 58%는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즉, 20대 혹은 30대에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시차를 두고 가졌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경우, 어떤 일자리가 출산과 관련된 일자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길었던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정의하였다.⁸⁾ 지속기간이 동일한 일자리의 경우는 가장 나중 것을 해당 연령대의 주된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8) 출산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성이 출산 시 가지고 있던 일자리를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매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산과정과 직업력에 대한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차선택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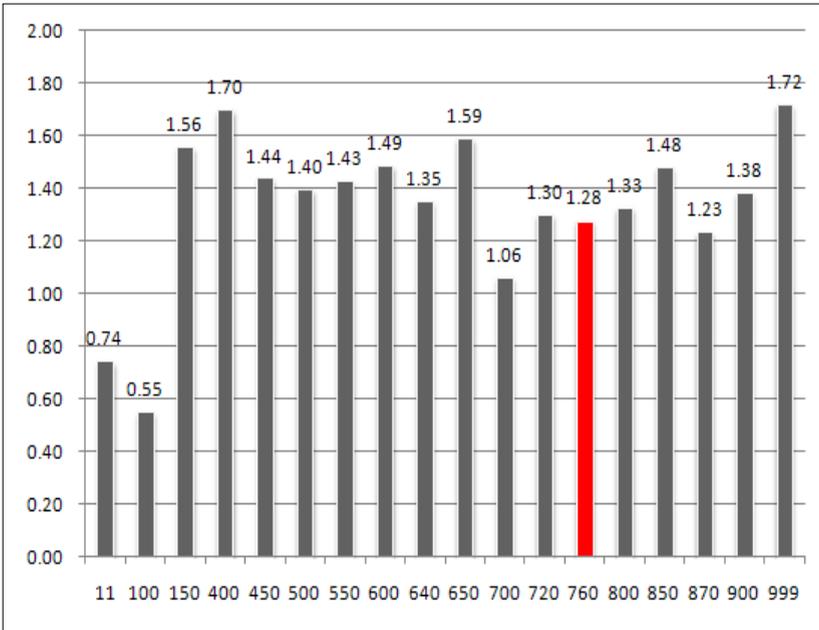
〈표 5-7〉 20대 혹은 30대에 시작한 일자리수

일자리수	관측수	비중	누적
1	1,778	42.07	42.07
2	1,040	24.61	66.68
3	672	15.9	82.58
4	347	8.21	90.8
5	185	4.38	95.17
6	112	2.65	97.82
7	47	1.11	98.94
8	26	0.62	99.55
9	12	0.28	99.83
10	3	0.07	99.91
11	4	0.09	100
총계	4,226	100	

자료: 10차 노동패널, 직업력

직업력 자료를 이용해 20대에 근무했던 산업을 통제했을 경우, 공공 부문의 자녀수는 1.28명으로 다소 증가하나 전체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경우 그리 높지 않다. 즉 20대에 공공부문에서 근무했다고 해도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직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늦은 결혼으로 인해 좀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된 경우일 수 있다. 또 하나의 좀 더 타당한 설명은 20대의 출산은 대체적으로 첫 자녀인 경우가 많다. 첫 자녀의 경우 여성의 경력 유지에 부담은 되지만 경력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해야 할 정도는 아닐 수가 있다.

[그림 5-6] 20대에 근무한 산업과 자녀수



자료: 10차 노동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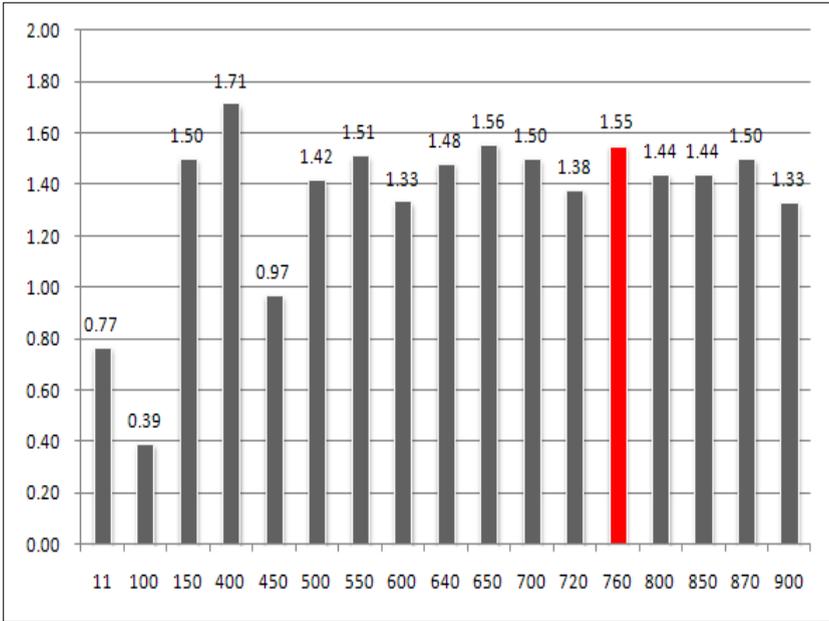
하지만 30대에 근무한 산업을 통제하고 나면 상황은 크게 변하게 된다.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한 여성의 경우 자녀수는 1.55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특히, 표본수가 적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경우⁹⁾를 제외하고 나면 공무원의 자녀수는 금융 및 보험업과 더불어 가장 높다. 자녀수의 크기를 궁극적으로 결정해주는 것이 두 번째 이상의 자녀임을 고려해보면, 둘째 이상을 출산하게 되는 30대에 있어서의 경력단절의 위험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5-8]이 보여주고 있듯이 30대에 시작한 직업의 산업과 자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20대에는

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경우도 본 연구에서는 민간으로 분류를 했지만 기간산업의 특성 상 시장에서 공공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부문으로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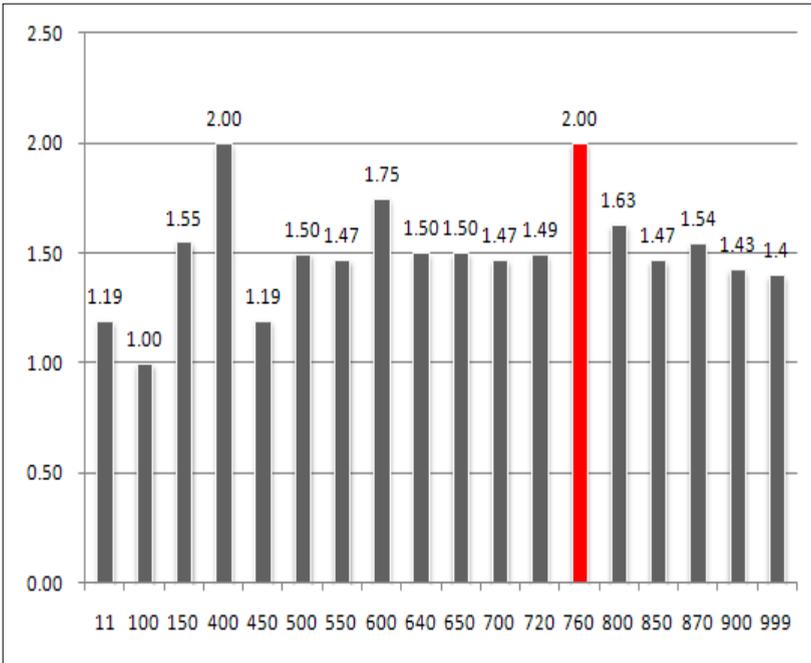
다른 직장에 있다가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출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부문으로 입직한 경우 자녀수는 2.0명으로 다른 어떤 산업부문 보다도 더 많은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7] 30대에 근무한 산업과 자녀수



자료: 10차 노동패널

[그림 5-8] 30대에 새로 시작한 직업의 산업과 자녀수



자료: 10차 노동패널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자. 자녀수와 기혼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혹은 근무했던 산업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20대 혹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산업의 경우 자녀수와 양(+)의 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둘째 이상을 출산하게 되는 30대에 공공부문에 근무했던 여성의 경우 다른 민간부문에 비해 최종적으로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모두 경력단절의 위험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근무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구의 특성의 영향일 수도 있다. 아니면, 자녀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가진 여성이 공공부문을 선택해 들어간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를 해야지만 경력단절위험으로 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출산율 차이를 추정해낼 수 있다.

2. 계량분석

본 절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서 앞 절에서 살펴본 산업간 경력단절위험의 차이가 여서의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성립하는지 살펴보았다. 기본적인 회귀분석 모형은 아래 식과 같다.

$$(10) \quad n_i = \beta_0 + \beta^{cu} PU_i^{cu} + \beta^{20} PU_i^{20} + \beta^{30} PU_i^{30} + \sum_{j=1}^K \beta^j X_i^j + \epsilon_i$$

n : 자녀수

PU^{cu} : 현재 공공부문에 종사 여부

PU^{20} : 20대의 주된 일자리가 공공부문 여부

PU^{30} : 30대의 주된 일자리가 공공부문 여부

X : 개인 및 가구의 특성, 직종 등

종속변수는 해당 여성의 자녀수를 사용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현재, 20대,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했는지의 여부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기혼여성의 연령, 학력, 가구의 소득, 직종 등을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요약통계량은 <표 5-8>과 <표 5-9>에 제시하였다.

〈표 5-8〉 요약통계량 1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수(명)	4461	1.244	0.955	0	5
현재 공공부문근무=1	2000	0.023	0.148	0	1
20대 공공부문근무=1	1697	0.018	0.134	0	1
30대 공공부문근무=1	2470	0.015	0.121	0	1
가구 총소득(만원)	4461	3471.045	3774.442	0	104826
연령	4461	48.752	14.256	17	91

자료: 10차 노동패널

〈표 5-9〉 요약통계량 2

학력	빈도	비중	누적
무학	301	6.75	6.75
초등학교	803	18.02	24.78
중학교	707	15.87	40.64
고등학교	1,574	35.32	75.96
전문대학	422	9.47	85.44
4년제 대학	567	12.72	98.16
석사	77	1.73	99.89
박사	5	0.11	100
총계	4,456	100	

자료: 10차 노동패널

<표 5-10>은 2007년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녀 수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1)은 공공부문 더미변수만 포함시켰고, 모형(2)와 모형(3)은 자녀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구소득과 기혼여성의 연령을 포함시켰다. 가구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을 포함시켰다. 모형(4)에는 이 외에도 기혼여성의 학력을 통제하였다. 기본모형에 대한 추정결

과 모형(1)-모형(3)은 [그림 5-4]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출산한 자녀가 모형(3)에서는 약 0.25명이 민간부문에 비해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모형(4)처럼 학력을 통제하고 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출산 자녀수 차이는 더 이상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감소하는 패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력의 차이가 자녀수의 차이를 상당 부분 설명하고 나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력단절위험의 차이가 설명할 부분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이다.

〈표 5-10〉 추정결과 1(현재 공공부문 근무여부)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현재 공공부문	-0.188 [0.136]	-0.208 [0.128]	-0.250** [0.127]	-0.0507 [0.117]
가구소득		5.64e-05** [2.65e-05]	5.19e-05** [2.49e-05]	5.35e-05** [2.63e-05]
연령			-0.0116*** [0.00230]	-0.00415 [0.00299]
상수	1.366*** [0.0215]	1.152*** [0.0996]	1.702*** [0.177]	0.585*** [0.211]
학력				Yes
관측치	2000	2000	2000	1998
R-squared	0.001	0.049	0.069	0.164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종속변수는 자녀수임.

〈표 5-11〉는 현재 공공부문 대신 20대에 공공부문에 종사했는지에 관한 변수를 포함시켜 추정한 결과이다. 계수의 크기에는 〈표 5-10〉

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즉, 2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한 여성의 자녀수가 민간부문에 종사한 여성의 자녀수보다 대체로 작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20대에 통상적으로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첫 번째 자녀 출산이 경력단절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표 5-11> 추정결과 2(20대 공공부문)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20대 공공부문	-0.403** [0.182]	-0.444** [0.178]	-0.442** [0.177]	-0.456*** [0.174]
가구소득		8.00e-05*** [9.36e-06]	8.21e-05*** [9.40e-06]	8.45e-05*** [9.57e-06]
연령			-0.00507** [0.00222]	-0.00585** [0.00281]
상수	1.532*** [0.0215]	1.240*** [0.0413]	1.442*** [0.0991]	0.901*** [0.236]
학력				Yes
관측치	1697	1697	1697	1697
R-squared	0.004	0.064	0.068	0.115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종속변수는 자녀수임.

<표 5-12>는 20대 대신에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일한 변수를 이용하였다. 위의 <표 5-11>와 다른 측면은 30대에 공공부문에 종사한 여성들의 출산 자녀수가 민간부문에 일한 여성의 출산 자녀수보다 작지 않다는 점이다. 모형(1), (2), (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양수로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한 여성의 출산 자녀수가 오히려 많았다. 30대에 주로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많고, 종국적으로 두 번째 자녀의 출산결정이 산업별 자녀수 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 때,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 정도는 얻을 수 있다.

〈표 5-12〉 추정결과 3(30대 공공부문)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30대 공공부문	0.213 [0.142]	0.0956 [0.143]	-0.0697 [0.148]	0.0914 [0.137]
가구소득		6.62e-05** [2.60e-05]	4.75e-05** [2.03e-05]	5.35e-05** [2.31e-05]
연령			-0.0258*** [0.00188]	-0.0212*** [0.00219]
상수	1.354*** [0.0191]	1.113*** [0.0938]	2.405*** [0.153]	1.849*** [0.169]
학력				Yes
관측치	2470	2470	2470	2468
R-squared	0.001	0.065	0.177	0.238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종속변수는 자녀수임.

<표 5-13>은 20대, 30대, 현재의 공공부문에서 종사여부를 동시에 통제한 경우이다. 20대와 현재의 공공부문 변수가 음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반해, 30대 공공부문 변수의 경우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부호도 양수이다. 즉, 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일한 여성의 경우 과거에 어디서 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 0.6명 정도의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3〉 추정결과 4(20대, 30대 공공부문 통제)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20대 공공부문	-0.23 [0.435]	-0.144 [0.424]	-0.258 [0.417]	-0.212 [0.454]
30대 공공부문	0.520** [0.219]	0.611** [0.246]	0.603** [0.252]	0.674** [0.290]
가구소득		7.65e-05*** [1.25e-05]	7.81e-05*** [1.21e-05]	8.08e-05*** [1.20e-05]
연령			-0.0138*** [0.00417]	-0.0130** [0.00514]
상수	1.730*** [0.0278]	1.448*** [0.0588]	2.029*** [0.188]	1.461*** [0.424]
학력				Yes
관측치	776	776	776	776
R-squared	0.003	0.059	0.076	0.099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종속변수는 자녀수임.

이러한 출산자녀의 산업간 차이가 실제로 산업 간의 경력단절위험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어떤 산업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종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예컨대 전문직으로 일할 때의 경력단절위험도와 단순 사무직으로 일할 때의 경력단절위험도가 산업간 경력단절위험도 차이에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제하기 위해서, 30대 주된 일자리의 직종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직종분류는 통계청의 대분류를 사용하였고 분류표는 <부표 3>에 제시하였다. 직종을 통제한 후의 추정결과는 <표 5-14>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결과의 대체적인 방향은 <표 5-13>의 결과와 일치한다. 오히려 직종을 통제하고 난 후에 공공부문의 효과가 좀 더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 예컨대 같은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30대에 공공부문에 종사하였던 여성이 민간부문에 종사했던 여성보다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였다.¹⁰⁾

<표 5-14> 추정결과 4(직종 통제)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20대 공공부문	-0.22 [0.438]	-0.0778 [0.442]	-0.117 [0.438]	-0.0747 [0.469]
30대 공공부문	1.248*** [0.124]	1.380*** [0.129]	1.388*** [0.126]	1.649*** [0.182]
현재 공공부문	-0.818* [0.473]	-0.626 [0.470]	-0.541 [0.422]	-0.0379 [0.298]
가구소득		7.94e-05*** [1.69e-05]	8.34e-05*** [1.69e-05]	8.96e-05*** [1.57e-05]
연령			-0.00832 [0.00661]	-0.0048 [0.00714]
상수	1.500*** [0.439]	1.264*** [0.405]	1.583*** [0.464]	0.00936 [0.706]
학력				Yes
직종	Yes	Yes	Yes	Yes
관측치	502	502	502	502
R-squared	0.022	0.079	0.083	0.123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종속변수는 자녀수임.

10) 여기에서는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직종별로 출산 자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추정결과를 정리해보자. 20대에 공공부문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은 민간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에 비해 약 0.6명 정도 더 출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논의

위의 회귀분석 결과에 대해 꼭 짚고 가야할 다음과 같은 3가지 정도의 논점이 있다. 첫째, 출산 자녀수의 결과가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결과일 수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자녀에 대한 선호가 강한 여성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이 보장되는 공공부문으로 선택해 들어간 것이라면 공공부문의 자녀수가 좀 더 많게 관측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공공부문 변수의 내생성 문제(endogeneity problem)가 발생할 것이고 적당한 도구변수를 이용해서 추정해야만 일치추정치(consistent estimate)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대 공공부문 변수가 오히려 음(-)의 방향으로 추정된 것을 고려해보면 이론이 지적하는 대로 내생성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즉, 공공부문에 대한 자기선택 과정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20대에 공공부문에 선택해서 들어간 여성에게도 역시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하며, 그 결과 20대에 공공부문에 근무한 여성의 출산 자녀수도 다른 부문에 종사한 여성의 자녀수보다 커야한다. 하지만, 추정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부문 변수에 내생성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이 경력단절위험도의 산업

간 차이가 아니라 그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질적 혹은 양적인 차이를 추정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가령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는 경력단절의 위험도 차이뿐만 아니라 근무 여건에서도 차이가 큰 차이다. 예컨대, 공공부문의 경우 퇴근시간을 잘 준수하고 있어 퇴근시간이 일정한 반면에 민간부문의 경우 야근이 잦다. 이러한 차이는 육아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한 부문간 출산 자녀수의 차이는 경력단절의 위험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의 차이까지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세 번째는 공공부문의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정의를 ‘공무원’ 수준에서 다소 좁게 정의하였다. 하지만, 공무원 수준의 안정성을 누리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많다. 예를 들어, 공기업이나 공사, 사립학교 교사 등 많은 부문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출산 전후의 경력이 보장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정의를 이와 같은 부문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했을 경우 추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공공부문에 ‘교육종사자(산업분류 800)’를 포함시켰을 경우, 공공부문의 효과가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효과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차후의 연구에서 좀 더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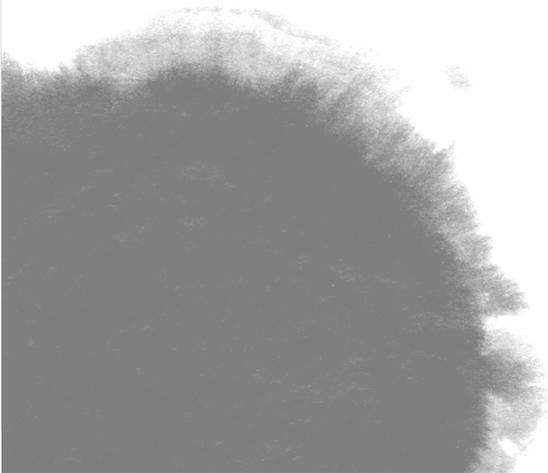
본 연구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공공부문에 근무한 여성과 민간부문의 여성의 출산 자녀수를 비교함으

로써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30대에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보다 0.6명 정도 추가적으로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시기에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여성이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의 출산 행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 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기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여성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가족친화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예컨대 현재의 출산율제고정책이 주로 보육시설 공급,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보육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육정책은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참가와 더불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1차적인 효과는 있다. 하지만, 보육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여성 근로자가 두 번째 이상의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가 힘들어진다면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가 힘들 것이라는 시사점을 본 연구는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유럽 선진국처럼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법적으로 제도화도 필요하겠지만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현재 시행 중인 법적인 혜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통해 경력단절의 위험을 줄였을 때만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06

결론 및 보육지원정책의 과제



제6장 결론 및 보육지원정책의 과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크게 보육비지원정책,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기능보강사업, 보육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공보육 기반 조성,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참여정부 이후 규모가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다. 2003년에는 보육부문 사업이 약 3,000억원 규모였던 것이 2009년에는 약 1조 7천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면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매년 팔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보육정책의 확대는 주로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까지 보육료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맞벌이 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등, 향후에도 보육정책은 규모면에서 지속적인 확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정책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이 사업이 확장되어 온 측면이 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수당지급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책방향이 명확하지 않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대상자의 확대와 예산의 추가적 투입에 대한 반성과 명확한 정책방향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육정책이 여성의 사회활동 욕구를 저해하는 보육환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하여 여성의 노동참여율과 노동공급을 제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보육지원이 출산을 제고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육료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분석 결과 보육료 지원은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와 노동공급시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까지의 보육료 지원이 비연속적인 소득구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의 취업으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는 보육료지원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는 보육료 지원체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육료 지원이 소득 구간별로 비연속적으로 결정되므로,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2007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만5세아 보육료 전액 무료 대상이 도시지역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까지였던 것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까지로 확대되고, 차등보육료 부분적 지원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인 가구까지 확대되는 등 보육료 지원대상이 증가하였다. 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인 3층에는 50%의 보육료가 지원되던 것이 80%로 증가하였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인 4층에는 40%의 보육료가 지원되던 것이 50% 지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보육료 지원구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취업에 대한 유인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기혼여성의 경우 출산 및 육아와 노동참여 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있다. 여성에게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주거나 경력에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공공 부문에 근무한 여성과 민간부문의 여성의 출산 자녀수를 비교함으로써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30대에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엄마의 경우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엄마보다 0.6명 정도 추가적으로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시기에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 부문에 근무하는 여성이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이는 보육정책이 육아 부담의 완화를 통하여 여성이 직면하는 경력단절이라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보육정책 외에도 기타 노동시장정책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문화의 정착 등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육정책이 보육료지원과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등으로 가정내 보육의 선호가 줄어들고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인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가와 출산율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공급은 기혼여성 취업자의 경우 저숙련, 저학력, 저임금 직종의 노동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별 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 낮은 저소득층 기혼여성이 생계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취업하는 경우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보육료지원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은 다분히 존재한다. 현실적으로도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되

었다가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여 오고 있다. 보육료 지원은 최근에 들어 해마다 1~2조원씩 예산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 대상과 지원액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어서, 어느 수준까지 보육지원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육지원의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보육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있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가 자녀의 양육책임을 나누어지는데 있어서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이미 높은 복구형 모형의 맥락에서 추구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것보다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보육부담으로 인한 여성 노동참여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제고하는 모형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모델, 보육시설의 양질화를 통한 보육시설 이용을 제고, 여성노동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육지원 모형 등 보다 한국적인 제삼의 보육정책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육지원을 통한 자녀 양육의 부담완화와 여성노동공급의 활성화는 보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정책은 맞벌이 부부에게 노동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육료지원 대상의 소득구간별 비연속성으로 인해 노동유인이 감소되는 지원형태의 재설계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출산과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질의 보육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공립시설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육료 자율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간 보육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우영(2003),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원(2003), 『정부 보육비 지원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양대학교 경
제연구소
- 김지경, 조유현(2002),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지경(2003), 기혼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지경(2004), 첫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 신규진입의 결정요인, 대한가
정학회지 제42권 1호
- 김현숙(2005), 『영유아 보육정책의 방향: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재정포럼, 10(11), 6-23, 한국조세연구원.
- 김현숙, 류덕현, 민희철(2006),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
재정정책: 출산을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조세연구
원
- 김현숙(2008), 『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차등보육료 확대
방안』, 재정학연구.
- 변용찬, 서문희, 이상현, 임유경(1998), 『보육시설확충 3주년계획 평가
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선희(2005),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재구조화: Burchardt 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 보건복지가족부(1999-2009),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가족부.
- 서문희 외(2004),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 :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5』,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부(2005), 『보육시설 시설 실태조사 보고 :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2』, 여성부.
- 여성부(2005), 『2005년 3월 세계여성정책보고』, 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 우석진(2007), 저출산 대책으로서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6월호
- 유희정, 강정희(200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조운영(2000), 『보육보조금의 효과 분석: 영아기본보조금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최성은 외(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효미(2006), KLIPS에 나타난 출산의 특징과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7월호
- 표갑수(2005), 『영유아보육사업 실태와 정책과제: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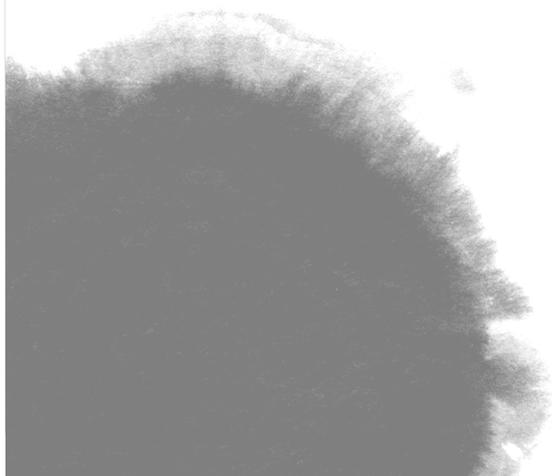
- 로』, 41, 341-369, 한국영유아보육학
- 한국개발연구원(2007), 『기본보조금사업』, 2007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한상미(2006), 『보육료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공공성 평가』, 사회복지리뷰 (11), 109-137.
- 현진권(2005), 『보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재정학연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홍미영(2004), 『부산지역 영유아 보육실태분석과 정책개선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 황수경(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본연구본부.
- Hotz, V. and R. Miller (1988), "An Empirical Analysis of Life-cycle Fertility and Female Labor Supply," *The Econometrica* 56(1), pp.91~118
- Moffitt, R. (1984), "Profiles of Fertility, Labour Supply and Wages of Married Women: A Complete Life-Cycle Model,"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1(2), pp.263~278.
- Rosenzweig, M. and K. Wolpin (1980), "Life-Cycle Labor Supply and Fertility: Causal Inferences from Household Model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2), pp.328~348.
- Coben, P. N. (1990), Marriage, "Children, and Women's Employment: What do We Know?", *Monthly Labor Review* 122(12): 23~31
- Fosu, A. K. (2000),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Do Regions Matter?", *American Economist* 44(1):

70~80.

- Kimmel, j. (1998), "Child Care Costs as a Barrier to Employment for Single and Married Mothe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2): 287~299.
- Shaw, K. L. (1992), "The Life-Cycl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and Its Implications for Household Income Inequality", *Economic Inquiry* 30(4): 548~772.
- Blundell, R. W., J. Ham and C. Meghir (1998c) "Unemployment, discouraged workers and female labor Supply", *Research in Economics* 52: 103~131.
- Dooley M.D. (1982), "Labor Supply and Fertility of married women: an analysis with grouped and individual data from the 1970 U.S census", *Journal of Human Resources*, 17:499~532.
- Hausman, J. and P. Rund (1986), "Family labor supply with taxes", *American Economic Review*(Papers and Proceedings) 74: 242~248.
- Heckman, J.J. and T.E. MaCurdy (1980), "A life-cycle model of female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 Studies* 47:47~74.
- Killingsworth, M. and J. Heckman (1986),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in: O. Ashenfelter and R. Lay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1 (North-Holland, Amsterdam) pp.103~204.
- Smith, J. P. (1977), *Female labor supply: theory and estimation*(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Van Soest, A. (1995), "Structural models of family labor supply: a discrete choice approach,"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63~88.
- Averett, Peters, and Waldman, (1997), "Tax Credits, Labor Supply, and Child Ca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9, No. 1.
- Blau and Robins (1988), "Child-Care Costs and Family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0, No. 3.
- Chevalier, A. and T. K. Viitanen (2002), "The Causality Betwe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Availability of Childcare,"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9. pp. 915~918.
- Connelly, R., (1992)"The Effect of Child Care Costs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1), pp 83~90.
- Ribar, David C. (1990), "A Structural Model of 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Working Paper* 1-91-1.
- Ribar, David C. (1995), "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 pp134~165.

부 록



부록

〈부표 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자녀수와 연령분포(전체)

산업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1	기혼여성의 연령	179	60.40	10.87	23	79
	자녀수	179	0.79	1.03	0	5
100	기혼여성의 연령	2	47.50	4.95	44	51
	자녀수	2	2.00	0.00	2	2
150	기혼여성의 연령	346	44.07	9.85	19	78
	자녀수	346	1.54	0.93	0	4
400	기혼여성의 연령	5	39.20	6.91	29	48
	자녀수	5	1.60	0.89	0	2
450	기혼여성의 연령	32	47.03	10.04	26	69
	자녀수	32	1.44	0.80	0	3
500	기혼여성의 연령	369	45.98	11.08	22	79
	자녀수	369	1.46	0.91	0	4
550	기혼여성의 연령	294	47.64	8.59	22	71
	자녀수	294	1.48	0.95	0	4
600	기혼여성의 연령	23	44.26	12.65	25	63
	자녀수	23	1.39	1.16	0	4
640	기혼여성의 연령	24	38.42	6.40	28	54
	자녀수	24	1.46	0.83	0	3
650	기혼여성의 연령	85	41.87	9.77	26	67
	자녀수	85	1.48	0.85	0	3
700	기혼여성의 연령	33	47.42	9.74	26	68
	자녀수	33	1.61	0.86	0	3
720	기혼여성의 연령	95	45.00	12.30	25	73
	자녀수	95	1.16	0.89	0	3
760	기혼여성의 연령	45	42.20	12.66	26	68
	자녀수	45	1.18	0.91	0	2
800	기혼여성의 연령	192	38.08	8.45	24	63
	자녀수	192	1.32	0.95	0	3
850	기혼여성의 연령	98	39.36	9.56	25	60

산업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수	98	1.38	0.90	0	3
870	기혼여성의 연령	30	42.73	9.74	22	63
	자녀수	30	1.30	0.99	0	4
900	기혼여성의 연령	148	48.97	10.22	19	73
	자녀수	148	1.22	0.85	0	3
전체	기혼여성의 연령	2000	45.88	11.47	19	79
	자녀수	2000	1.36	0.95	0	5

자료: 10차 노동패널(2007)

〈부표 2〉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자녀수와 연령분포(임금노동자)

산업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1	기혼여성의 연령	22	60.18	14.33	23	76
	자녀수	22	0.55	0.74	0	3
150	기혼여성의 연령	281	43.09	9.75	19	75
	자녀수	281	1.54	0.92	0	4
400	기혼여성의 연령	5	39.20	6.91	29	48
	자녀수	5	1.60	0.89	0	2
450	기혼여성의 연령	26	46.96	10.69	26	69
	자녀수	26	1.35	0.75	0	3
500	기혼여성의 연령	177	41.45	8.86	22	69
	자녀수	177	1.45	0.90	0	3
550	기혼여성의 연령	154	46.49	8.95	22	70
	자녀수	154	1.47	0.92	0	4
600	기혼여성의 연령	18	41.83	12.98	25	63
	자녀수	18	1.17	0.99	0	3
640	기혼여성의 연령	22	38.55	6.65	28	54
	자녀수	22	1.45	0.86	0	3
650	기혼여성의 연령	39	36.26	8.36	26	57
	자녀수	39	1.33	0.77	0	2
700	기혼여성의 연령	15	44.80	11.45	26	63
	자녀수	15	1.73	0.96	0	3
720	기혼여성의 연령	89	45.20	12.59	25	73
	자녀수	89	1.13	0.89	0	3
760	기혼여성의 연령	45	42.20	12.66	26	68
	자녀수	45	1.18	0.91	0	2
800	기혼여성의 연령	150	37.42	8.35	24	59
	자녀수	150	1.25	0.95	0	3
850	기혼여성의 연령	96	39.28	9.64	25	60
	자녀수	96	1.39	0.90	0	3
870	기혼여성의 연령	15	37.53	8.34	22	55
	자녀수	15	1.07	0.96	0	2
900	기혼여성의 연령	81	50.04	10.68	19	71
	자녀수	81	1.20	0.81	0	3

자료: 10차 노동패널(2007)

〈부표 3〉 직종분류(통계청, 2002년)

직종 번호	직종
10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00	전문가
2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300	사무 종사자
400	서비스 종사자
500	판매 종사자
600	농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7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00	단순노무 종사자
950	군인
995	무직

자료: 노동패널 10차 코드집에서 재인용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of Health & Social Affairs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8,000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턴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제도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실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1)	정영호	6,000
연구 2009-05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5,000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비만의 역학적 특성 분석과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부문간 협력체계의 탐색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7,000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신현용	6,000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5,000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7,000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여유진	8,000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13,000
연구 2009-17	이동 청소년 복지수요에 근거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8,000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김유경	8,000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미정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미정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9,000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6,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28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영호	6,000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10,000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11,000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9,000
연구 2009-3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7,000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9-31-5	자활사업의 평가 연구: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고경환	7,000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14,000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외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6,000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미정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7,000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6,000
연구 2009-36	2009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7,000
연구 20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20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20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20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20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20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7,000
연구 20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7,000
연구 20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20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2008-11	사회계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6,000
연구 20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20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김유경	15,000
연구 20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8,000
연구 20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6,000
연구 20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연구 20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신현웅	5,000
연구 20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20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6,000
연구 20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2008-20-1	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2008-20-2	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2008-20-3	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삼식	7,000
연구 2008-20-4	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신우덕	9,000
연구 20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가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신우덕	5,000
연구 20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20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20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어유진	9,000
연구 20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20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2008-23-1-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1-2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삼호	5,000
연구 20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6,000
연구 20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20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20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20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20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6,000
연구 20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20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20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20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20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20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7,000
연구 20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